

의 초기 20년을 위한 인류 주거환경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9. Habitat II는 국가(States) 중심의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사회(Community)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나라 정부의 역할이 주효하다. 하지만 공공 및 개인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은 인류 주거환경의 발전이라는 목표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지구 회의나 Habitat II 같은 회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다. 비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주거 문제의 점진적인 발전과 해결에는 지역단체, 시민운동 및 정부, 기업, 근로자 및 민간 단체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40. Habitat II는 지난 5년 동안 UN의 지원하에 열렸던 세계 회의 시리즈의 마지막 회의였다.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의로움에 관해 문제제기되었던 중요 이슈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는 중요하다. 사회, 환경, 재난 방지, 인구 및 성 문제 등에 관한 전략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실천되어야 한다.

41. Habitat II에서는 전인류를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 및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개발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러한 주제의 실천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바로 이점이 Habitat II 범지구적 실천계획: 실천을 위한 전략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데는 각 국가별 특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2. 범지구적 실천계획에 관한 전략이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정부, 지역사회 및 비정부 조직 등과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인류가 꿈꾸는 공동의 미래를 구명하고 실천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자원을 정의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실천 목표가 기본적 원칙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 (a) 여성과 남성이 개인적 권리와 책임을 실천하고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b) 모든 조직과 단체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c) 정부에 의한 자기 발전의 환경을 조성한다.

## B. 모든 인류를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

### I. 서론

43. 적절한 주거환경이란 단지 1가구당 1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주거환경이란 적절한 사생활의 보호, 적절한 공간 및 안전, 구조적 안정 및 지속성, 적절한 채광 및 환기, 적절한 기본 하부구조, 용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직장과의 적절한 통근거리내의 위치 및 기본 시설의 이용 등이 경제

적인 비용에서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적절한 주거환경에 대한 조건은 각국의 문화적, 기후적, 경제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44. 모든 인류는 자기 정부가 주거에 관한 요구를 수립하고 국민들이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민과 이웃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1987년 이래로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의 해를 선정한 것과 2000년대를 향한 범지구적 주거 전략수립을 통해 주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법에는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실천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이러한 추세는 주거의 생산과 향상과 관련된 잠재력과 자원을 적절히 이동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실현가능한 개념'(enabling concept)이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정의한 요구와 우선 순위에 따라 주거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주거에 관한 전략이란 사용 가능한 지역별 고유의 자원을 대단위 규모로 이동해야 하므로 실현가능한 접근방법에 근거한 주거 전략은 지속가능한 인류 주거환경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원의 관리는 생태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주거와 관련된 정책과 실천방안 등이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통합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정책과 거시경제, 사회개발정책, 환경관리 정책의 통합은 B부문의 기본 목적이다.

46. 주거지가 형성되던 초기에 주거지가 갖고 있는 전달 메카니즘은 시장을 형성했다. 주거지의 전달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B장의 두번째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단을 포함한 활동을 권장한다. 기타의 다른 목적과 권장 활동을 통해 주거지의 전달 시스템은 토지, 금융, 하부구조 및 서비스, 건설, 건축 자재, 유지 및 복원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각각의 요소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집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에서의 참여가 금지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이들이 공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권장 활동의 목적이다.

47. 모든 인류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를 장려하는데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

## 2. 국가의 주거정책

48. 모든 인류를 위한 적절한 주거지 확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전달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시각에서 국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설정 및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거시경제 및 사회개발 정책과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주택정책이란 주택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및 이를 뒷받침할 하부구조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존의 재고주택이나 임대주택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사적, 공적으로 주택의 생산자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은 빈민, 난민, 여성, 원주민, 약자 및 취약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세칙(Actions)

49. 국가의 주택정책과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및 환경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 (a) 시장의 정의(Identification)나 국가 보조금 책정 등을 포함하여, 주택에 관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 및 인간의 주거 및 주택 정책에 관련된 정부 부서간의 건설적인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운영한다.
- (b) 거시경제정책과 주택전달 시스템의 유기적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주택전달 시스템 정립시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한다.
- (c) 고용 창출, 자원의 이동,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개발에 대한 주거 정책의 기여도를 강화한다.
- (d) 공공기금 및 계획안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을 지속가능한 주거지 및 토지의 개발에 적용한다.
- (e) 주거 정책을 빈곤 타파, 고용 창출, 환경보호, 소외층 보호 등의 정책과 통합한다.
- (f) 주거용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에 있어 관련 조사를 활성화한다.

50. 실현가능한 정책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 (a) 정책 개발에 공공, 개인, 비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다양한 대표들이 관련 자문 위원회(또는 메카니즘)를 구성해야 한다.
- (b) 정책 개발 과정에 있어 각 지역의 역할에 적합한 책임을 정하고 협력과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성한다.
- (c) 각 단계의 관련 인사들간의 파트너쉽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채택하고 조직적 지원을 제공한다.

51. 정책 개발을 위한 각 단계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a) 주택 정책을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거, 토양 및 하부구조 정책 등과 통합해야 한다.
- (b) 주택 정책을 세우고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 개발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c) 지역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건설 자재산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수행가능한 건축행위들, 건설자재 제작 및 분배를 장려한다.
- (d) 기층 여성조직들의 구조에의 참여와 계획수립, 운영과정에 동참하도록 보장하고 훈련시킨다.

52. 주거 공급 체계 (Shelter delivery system)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a)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에서 주택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
- (b) 자연, 인간, 기술 및 금융 자원의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c) 적절한 조직적 틀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특히 사적 단체들이 제공하는 도시와 농촌의 주택공급 투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직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 (d) 빈민과 저소득층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 공공자금 및 제도적 틀을 재검토하고 수정한다.
- (e) 정기적으로 주택에 관한 자금정책과 시스템을 재검토한다. 이때 환경, 경제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 (f) 주택 및 관련 하부구조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땅, 자원, 건축자재 등의 주요 자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관리될 수 있는 정책을 촉진하고 이를 채택한다.

3. 주택공급체계(Shelter Delivery Systems)

(a)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에 따른 주택의 유통

53.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주택 유통 체계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을 거래하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갖는다. 주택시장이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빈민이나 기타 소외계층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

행동세칙

54. 주택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지역단체를 포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a)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주택시장 및 기타의 유통 체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분석하고 배포한다. 또한 개인주택시장에 관련된 개인 및 언론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b) 공급을 방해하고 주택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왜곡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간섭을 피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계약, 토지의 사용 및 건설기준 등을 포함한 법과 제도적 틀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 (c) 자산권의 분명한 정의에 대한 메카니즘을 개발한다.
- (d) 지나친 제도적 제한없이 토지와 주택의 교환을 허용한다. 자산의 교환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한다.
- (e) 공공기금 사용에 관한 세금, 주택과 토지의 공급·장려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제공한다.

(b) 토지 소유 보장

55. 토지에의 접근은 적절한 주거지 공급에 전략적 필수요건이다. 이는 또한 가난의 악순환을 근절시키는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에 공평한 접근을 막는 모든 가능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적합한 토지 정책과 토지관리 프랙티스의 채택 실패는 불공정과 가난의 주원인이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생활비의 상승, 재해가능지역의 거주환경의 악화와 도시 및 농촌의 취약성의 원인이 된다.

실행(Actions)

56. 토지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레벨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a) 다양한 토지 배분장치를 인식 법제화한다.
- (b) 타 중요 관계자(Key Stake holder)를 인식하는 지역 역량 구축 프로그램(Local Capacity -building program)의 공급과 함께 토지관리 책임을 분산시킨다.
- (c)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목표를 작성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주거지와 거주개발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d) 효과적이며 환경에 건전한 그리고 공정한 토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진보적인 세금과 인센티브 장치를 적용한다.
- (e) 공지에 대한 투기목적의 매점을 방지하고 주거지 개발을 위한 토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적인 측면과 그밖의 다른 조치를 고려한다.
- (f) 토지가치평가를 위한 토지정보 시스템과 실행방법을 개발한다.
- (g) 도시지역은 기존 기반시설을 충분히 이용토록 하고 유용 가능한 서비스 토지점유 집중화를 권장한다.
- (h) 토지가치를 되찾고 일반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구를 이용한다.
- (i) 무허가 거주 규제와 토지거래 단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과세시스템과 능률적인 토지 등록절차를 개발한다.
- (j) 공식적으로 인정된 토지의 성격, 재산가치 및 권리를 정의할 수 있는 토지 코드와 그밖의 토지 법령을 개선한다.
- (k) 토지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리서치, 기술의 이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과 지역의 전문지식을 동원한다.
- (l) 토지개혁, 토지개발과 경제적 다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농촌개발을 촉진한다.
- (m) 토지전환과 토지이용전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57. 효과적 토지시장과 공평하고 환경에 적합한 토지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레벨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거주와 환경정책을 염두에 두고 계획의 수립과 건축 규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변경 적용시킨다.
- (b) 효과적 법률체계에 의한 토지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 토지 동원을 위한 여러 가지 유연한 장치를 다양한 사법상의 제도와 함께 개발한다.
- (c) 토지시장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업체(사람)(Stake holder)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간섭을 촉진한다.
- (d) 환경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토지 사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건축에 관한 권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토지사용규칙을 개발한다.
- (e) 너무 제한적이고 비용이 드는 법률, 규제 절차와 계획수립 시스템, 기준 및 규율에 대해 재검토한다.

58.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 특히 여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개인, 비정부기관, 협회 및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다.

- (a) 인종차별, 배타성 등을 이끌어내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원인에 대응한다.
- (b) 기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실행을 촉구한다.
- (c) 법률, 규정 체계를 검토하고 세계실천계획(The Global Plan of Action)의 원칙과 공약

- 에 맞게 이를 수정하며 여성,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고 집행되도록 촉구 한다.
- (d) 정규프로그램(regularization programmes)을 개발하고 관계 주민과 조직단체와 상의하여 이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이때 성차이에 의한 다른 요구를 염두에 둔다.
- (e) 무허가 도시 거주에 있어 여성 특히 여성 가정이 처한 상태를 인식하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규제를 없앤다.
- (f) 남편 사망시 집과 재산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59. 사회경제적 모든 그룹의 토지 접근성과 소유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개인 기업과 지역공동체와 협력관계를 촉구하기 위해 기존의 실행방법과 토지배분장치에 관한 지식, 이해 및 수용에 기초해 인정되고 있는 토지 소유형태를 명시하고 필요한 곳에 소유권 제도화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부여 법, 규율 체계를 채택한다.
- (b)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토지관리에 책임과 투명성을 촉진하며 토지소유와 거래 및 현재 또는 계획된 토지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마련한다.
- (c) 단지 전면적인 법제화는 어떤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유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를 모색하고 재래의 명목상 절차 없이 신용제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혁신제도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한다.
- (d) 개인적 공식, 비공식 분야에서 중심역할자(stake holder)의 잠재적 기여에 투자한다. 비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및 개인의 참여적이고 통합적 이니셔티브와 장치에 참가를 지원한다.
- (e)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므로써 지역 공동체와 비정부기관의 참여를 특히 촉구한다.
  - (i) 토지, 주택보급, 서비스 생산과 관리에 다양한 형태의 주민단체를 인정하고 또 촉구 하기 위해 법, 규율을 검토하고 고쳐나간다.
  - (ii) 단체를 신용담보인(Credit holders)으로 인정하는 금융시스템을 개발, 실행하고 개인 또는 기업의 집합(Collective Units)을 집합담보(Collective Collateral)에 의해 보증할 수 있도록 신용을 확장하고 주민들 자체에 의한 주택생산과 주민의 소득과 저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절차를 소개한다.
  - (iii) 재정적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술적 지원, 기술의 시험과 혁신에 필요한 자금 등과 같은 사회단체의 경제 운영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조적 제도를 개발, 실행한다.
  - (iv) 국가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함께 수행하는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비정부 단체 및 주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역량구축(capacity-building)과 경험축적을 지원한다.
  - (v) 지역 사회단체가 여성 개인의 보증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자금대출기관이 인정해 주도록 촉구한다.

(c) 재정자원의 활용(Mobilizing sources of finance)

60. 주택 금융기관은 재래식 시장에는 도움이 되나 대다수의 주민 특히 빈곤층이나 여성의 요구에는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 주택 금융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 자금원을 보다 많이 동원하고 주부에게 신용대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시스템에 주택금융을 포함시키고 일반 금융시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자금지원을 집중하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금전적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Actions)

61.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를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적절한 레벨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해야 한다.

- (a) 자금원 동원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빈곤층에 신용대출 확장을 촉구하며 금융 시스템의 지불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금 또는 금융정책을 조정한다.
- (b) 기존 주택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c) 보다 쉽게 주택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d) 효과적인 법, 규정을 통해 금융 활동에 안전성과 도덕적 건전성을 담보한다.
- (e) 사금융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재산권을 설정하고 저당물 환수권 상실(foreclosure)에 관한 법을 강화한다.
- (f) 임대주택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요구에 부합하는 자금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사적 분야를 고무시킨다.
- (g) 경쟁적인 저당시장을 지원하고 보존시장(secondary market)과 보증제도 개발을 촉진한다.
- (h) 특히 농촌지역에서 대출이 실제로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된 대출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화시키고 사금융 분양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도한다.
- (j) 효과적 매니지먼트와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대출기관을 지원한다.
- (j) 빈곤층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저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2. 새로운 주택금융장치를 창설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레벨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해야 한다.

- (a) 특히 건축비가 저렴한 주택공급의 확보를 위해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주택공급과 복합 목적의 지역공동체 개발 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비 전통적 금융방식의 잠재성을 이용한다.
- (b) 비 전통적 방식의 대여자를 동원하기 위한 법, 규율적 체계와 제도상의 기초를 검토 강화한다.
- (c) 법과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므로써 특히 저축의 확대, 신용조합, 조합은행 및 보험업체 조합을 강화한다.
- (d) 지역 자본을 동원하여 지역업체나 지역공동체의 주택공급이나 기반시설 개발 활동에 투자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그러한 조합단체와 공공금융조합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한다.
- (e) 무역협회, 농부나 여성 또는 소비자조합과 그밖의 관계된 사람의 조합이 그들의 조합 자체로 조직한 금융조합이나 기구를 결성하도록 권장한다.
- (f) 주택금융제도의 혁신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구한다.

63. 기존의 금융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택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용이나 땅 등을 담보로 내세울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실제적인 자금지원 시스템을 검토, 합리화하여야 한다.

(d) 기초적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확보

64. 지역 공동체에서 기초 기반시설과 서비스란 물의 안전한 공급, 위생하수 및 쓰레기 처리, 교통·통신시설, 에너지, 건강, 위급시 서비스, 학교, 공공안전과 개방된 공간의 운영 등을 포함한다. 적합한 기초 서비스, 주거지의 주요시설 등의 부족은 주민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의 건강, 생산성 및 삶의 질 등에 커다란 해를 줄 수 있다. 지방 또는 지역행정 당국은 이러한 기초적 서비스를 적절한 법률과 기준으로 규제하여 효과적으로 배분할 책임이 있다. 기반시설과 기초 서비스를 관리,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중앙정부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인, 지역단체, 비정부기관 등은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이러한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그룹이다.

실행(Actions)

65.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또 적절한 기초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모든 다른 중요사업 시행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마시기에 안전한 물의 적절한 양의 공급과 주민이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b) 적절한 위생과 쓰레기, 하수관리
- (c) 적절한 공공 교통 통신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d) 사회 서비스의 공정한 배분
- (e) 적합한 에너지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f) 적절한 도로, 가로, 공원과 공개된 장소의 확보와 유지

66. 기초 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보급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해야 한다.

- (a) 개발 계획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개 장소를 포함한 모든 기초 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확보 및 배분에 모든 중요 사업자(Key stake holders)와 함께 참여한다.
- (b) 정책결정과 서비스 확보를 위한 우선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킨다.
- (c) 지역 공동체의 편의 시설을 위한 기준의 설정, 또 이러한 시설의 운영유지에 대해 공동체에 조언한다.
- (d) 학계 또는 전문 그룹이 지역공동체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석코자 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 (e) 특정지역에 투자 증가를 위해 중요사업자(Stake holder)로부터의 자금동원을 촉구한다.
- (f) 빈곤층과 취약층이 이러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설립한다.
- (g) 기반시설과 기초 서비스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지방의 주요사업자(local actors) 사이에 의견의 교환을 촉구한다.

67. 기반시설의 효율성, 서비스 확보와 그 운영관리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최저한도의 자치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서비스 관리를 촉진하는 장치를 창설한다.
- (b) 기초 서비스의 공급경쟁에 개인이나 사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c) 효과적 비용의 적절한 사용과 환경에 해가 없는 기술을 기반시설 및 서비스공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d) 서비스 공급에 사기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성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세우거나 개선한다.
- (e)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건축,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그룹과 계약상 합의관계를 세운다.

(e) 건축, 유지, 복구방법의 개선

68.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 및 공업화로 주택, 기간시설 및 기타 편의 시설의 건축, 유지, 복구에 필요한 재료 및 금융은 가끔 이러한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그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공공정책과 개인적인 투자 둘다 국가 또는 지방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이나 왜곡현상을 피하기 위해 건축자재나 기술 및 금융의 적절한 공급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질을 높이고 건축비를 절감함으로써 주택이나 기타 공공건물이 더 오래가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적합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건축업계의 고용 창출의 잠재력과 그밖의 대외적으로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전체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도움은 사회전반의 모두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요구되는 건강과 소비자 안전보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공업기준과 품질관리 형태의 제도적 지원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Actions)

69. 건축과 유지 및 복구에 요구되는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건축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훈련기관과 비정부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견습생 훈련과 급여 조정을 촉진한다.
- (b) 특히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건축, 유지 및 복구를 위한 비공식 분야(업체)와 지역 공동체와의 계약관계를 이용하며 여기에는 사업 참여에 중요성을 두어 단기 또는 장기 이익이 지역 공동체에 발생되도록 한다.
- (c) 효과적인 비용과 고용이 집약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고용창출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기반 시설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 위해 공, 사 두 분야의 능력을 강화한다.
- (d)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을 주로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물이나 편의 시설 등을 설계 시공하거나 건물내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엔지니어, 건축가, 계획자, 계약자 또는 그들의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 (e) 건축주에게 적절한 이율로 자금을 확보해 주기 위해 사분야의 대출을 지원한다.
- (f) 자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역공동체 개발이 필요한 지역사회기관, 비정부기관과 그밖의 다른 기관에 설계, 건축, 유지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원한다.
- (g) 규제와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h) 전문기관과 함께 엔지니어링, 건축, 설계 및 지역조건의 현재 기준을 기초로 한 건축법과 규칙, 행정완화와 실행기준 채택에 관하여 검토 개정한다.
- (i) 비정부기관과 그밖의 다른 그룹들이 주택의 계획, 설계, 레이아웃 등에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성의 참여를 담보하는 성 차이의 특별성을 고려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70. 지역에서 생산된 기초 건축자재의 공급을 촉구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정부와 그밖의 다른 주요 사업실행자(Stake holders)와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법적, 재정적 인센티브와 신용확보를 통해 환경에 부담이 적은 소규모 지방 건축재료 사업체의 설립과 확장을 촉구지원 한다.
- (b) 지역의 주요사업 실행자의 참여와 함께 건축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공기구를 설립한다.
- (c) 정보의 교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고 이러한 정보의 이전을 촉구한다.
- (d) 지역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조사 및 개발에서 이룬 것을 상업적으로 제품화하므로

써 혁신적 건축재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사와 개발 업무를 촉구 지원한다.

- (e) 비용이 저렴한 건축재료를 공공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허용하기 위해 건축기준과 준법령을 개정하거나 채택한다.
- (f) 셀프헬프(self-help : 자기들의 집을 자신과 이웃들이 협력하여 직접 짓는 것) 건축 프로그램을 위한 건축재료의 상업적 생산과 배급에 필요한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개인업체 또는 비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설립한다.
- (g) 상기 목적의 달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척 정도를 규칙적으로 평가한다.

71. 환경에 건전한 건축재료 생산과 건축기술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른 모든 주요사업 실행자(stake holders)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연탄과 같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원의 대체물을 찾거나 이러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되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염을 줄이며 쓰레기의 재순환 또는 재사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나무의 재식목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사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 (b) 적절한 규범과 효과적 규제조치가 뒷받침된 저에너지 사용 및 환경에 안전한 생산기술의 적용을 권장 촉구한다.
- (c)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광산 또는 채석장에 관한 정책을 채택한다.

4. 취약집단

72. 취약함이란 자원과 기회를 경쟁하여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취약집단의 주거, 금융, 기본 서비스와 안전 등에의 접근성을 증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취약집단이란 극빈자, 특정한 상태의 노인, 거리아동, 유민, 피난민, 소외된 지역의 거주민, 천재 또는 인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 여성가장, 불구자나 백치 등의 집단을 말한다. 주거면에서 볼 때 이들은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주택시장이나 서비스 등에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실행(Actions)

73. 주거지 확보에 있어 장애를 제거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주거문제에서 실행상 장애가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검토, 개정한다.
- (b) 차별과 장애를 없애도록 의도된 기존 법률이나 규정은 그 시행을 촉진한다.
- (c) 주택 거래나 서비스 공급문제 등에서 사회적 배타성이나 편견 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인, 조합, 지역공동체 및 다른 주요한 사업실행자(Stake holders)와 함께 일한다.
- (d) 취약그룹의 특수성이나 특별히 필요한 점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유엔회의에 당사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e) 취약 그룹이 보다 먼 거주지나 직장에 손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공교통을 마련한다.

74. 취약 그룹에 필요한 주거공급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모든 적절한 레벨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스탄불로 가는 길

- (a) 가장 취약한 그룹에 목적있는 투명한 자금지원, 사회적 서비스와 안전망(safty nets)을 마련한다.
- (b) 취약 그룹에 속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적인 분야 또는 공적인 분야에서 다른 주요 실행자(actors)와 함께 일한다.
- (c) 취약 그룹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d) 취약 그룹이 그 나라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75.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모든 적절한 레벨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취약집단의 사람들이 안전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관 또는 지역공동체기관과 함께 돕는다.
- (b) 임대관리제도 철폐기간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퇴거 등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충하며 그러한 퇴거가 불가결하다면 법에 의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c) 자립형 (자체가 협력해서 짓는)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d)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함으로써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며 고용의 증가, 생활조건의 개선 및 필요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 (e) 취약 그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한다.
- (f) 취약 그룹이 필요 법, 규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C. 도시화 되가는 세계에서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1. 서론

76. 도시의 급격한 성장, 대도시의 인구집중, 도시 지역의 확장 및 거대도시의 급격한 성장 등이 인간의 거주에 가장 큰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까지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나머지 인구도 그들의 경제, 사회, 복지를 도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도시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요인은 인구성장과 인구의 유입, 실직 또는 잠재적 고용기회, 문화적인 기대,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와 지역간의 심각한 불균형과 불공정 등이 있다.

77. 지구의 존재가치는 인간의 거주지 특히 도시가 경제 사회적으로 활력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문화유산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 도시거주는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한편 많은 수의 사람을 지원하는 능력을 통해 인간개발과 세계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도시는 생산과 소비, 토지의 이용과 공급의 비합리적이고 유해한 패턴, 도시의 물리적 구조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가뭄 토양, 공기, 물의 오염, 자원의 낭비와 천연자원 파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러한 경향의 대부분은 도시가 급격히 많아지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그 규모면에서 대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악화 및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적합한 개발이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도시나 수도권 행정부는 세계를 생명력있고 공평하며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 파트너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수준 거주지를 생명력있고 공평하며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 파트너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수준이 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를 추구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과 국제 협력체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78. 도시화는 또한 특수한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때때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 저개발 농촌지역을 국가경제에 끌어들이는 정책과 계획에는 강력한 준국가 정부기관(subnational government institution)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많은 지역에서 아직 그 힘이 미약하고 지역정치 또는 부족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도시농촌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도시와 농촌마을을 인간의 거주 연속선상의 두 끝으로 취급하는 지역 상호간의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도시가 그들 도시의 경제뿐 아니라 자국의 범위를 넘어선 연결 네트워크를 갖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79. 개발의 요구는 지역 범위내에서 또 환경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쓰레기의 무방비적 처리는 자연환경 즉 수(水) 생태계, 해안, 습지, 동물, 숲, 토착민의 원거주지 등 자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악화시킨다.

80. 농촌거주개발은 적합한 농업활동뿐 아니라 공업 및 관련된 상품생산과 서비스 활동 등에 적절하고 환경에 적합한 투자를 촉진하여 취업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각 구역 센타, 농촌 서비스 센타, 시장, 마을 등을 포함한 모든 거주지의 생활과 작업환경은 주거, 기반시설 및 기본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어야 한다.

81. 국제적 협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 즉 합리적 에너지와 토지이용, 환경보호관리, 재난의 예방, 대비 및 그 관리, 문화 역사 유적지의 복구와 보호 그리고 산업,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 적합한 거주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하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적합한 토지 이용

82. 토지자원은 생활 시스템, 토양의 공급, 에너지, 물 그밖의 모든 인간활동의 기회의 근본이 된다.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므로써 토지에의 접근은 주택, 산업, 상업, 기간시설, 교통 및 공용공간 녹지 대 등의 필요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도시 토지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의 적절한 토지구입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다. 도시지역을 자연환경과 거주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조화롭게 개발한다는 것은 적합하게 도시화된 세계를 이루는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물리적으로 보다 균형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는 특별한 도시정책, 법적, 재정적, 문화적 및 그밖의 다른 조치가 포함되거나 도시계획과 설계, 도시개발, 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혁신적 방법이 또한 필요하다. 경고적 법률과 영향의 평가분석 이용도 필요하다.

83. 많은 도시들이 도시와 관련된 목적의 주변 토지를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서비스를 위한 토지는 충분히 개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하고 건강치 못하며 부적절한 거주형태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교통에 필요한 토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용공간을 보호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토지이용 패턴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한 도시의 집중도와 혼합된 토지 이용은 중요하며 도시개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을 한다.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정책은 농업에 필요불가결한 토지의 보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 생물 서식지, 해안지역과 같이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에 민감한 지역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률의 극대화가 지리적으로 보다 균형된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실행(Actions)

84. 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관련된 국제 또는 지역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도시들이 적합한 토지이

이스탄불로 가는 길

용 패턴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이같은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a) 적합한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 주택 및 도시성장의 개선된 관리를 위해 공공정책의 수행을 이끌어내는 법률을 제정한다.
- (b) 지역개발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합되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토지시장을 확보한다.
- (c) 한정된 토지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급전적 인센티브와 토지이용 관리조치를 개발한다.
- (d) 적합한 도시개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지역에 개인투자의 보다 큰 유입을 자극하는 자원동원 전략이나 정책의 추진을 통해 거주자의 자본투자 필요성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인다.
- (e) 적합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자원 관리에 공사분야 및 기타 주요사업 실행자(stake holders)간의 협력을 촉구한다.
- (f) 주택, 산업, 상업, 기반시설, 교통 및 녹지대에 필요한 도시 토지의 경쟁적 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토지이용 매니지먼트의 실행을 개발, 지원한다.
- (g) 교통에 필요한 토지의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발 패턴을 추구하는 종합적 토지이용과 교통 플랜을 추진한다.
- (h)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적인 활동 수행의 적절한 지표를 기초로 한 투명한 도시 모니터링과 리포팅 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능력을 마련한다.
- (i)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실행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기초로 적합한 도시개발 참여를 제도화한다.
- (j) 기존의 도시 거주지에 지역공동체의 토지자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실천을 강화한다.

85. 토지운영관리(매니지먼트)의 개발 또는 이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a) 종합적 토지정보와 지도화(mapping) 체계
- (b) 법률의 실행과 공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토지관리법과 규정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나 법정과 같은 행정 또는 준사법적 지방기구를 설립한다.
- (c) 다양한 사법적 상태하에 있는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방식에 의한 토지시장을 개발한다.

3. 빈곤 축소화와 고용확대

86. 균형적이고 사회적 생존력과 안전성을 지닌 거주자의 발전은 빈곤의 감소 및 이의 궁극적 퇴치에 있다. 빈곤의 퇴치는 반드시 못가진 자에 대한 대한 그러한 접근을 촉진하는 특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고용과 일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생계보장을 촉진할 경제적 기회에 범세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범세계적 해결책은 없다. 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생활요인에 기구를 통해 또는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빈곤지역 거주민에게 발전의 일익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빈곤 감소정책의 핵심요인은 부와 소득의 보다 균형적인 분배를 촉진하는 정책 즉 스스로의 생계를 부양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장치, 인력자원 개발, 개량된 기반설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 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87. 도시 서비스 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타당한 수준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a)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균형적 접근 및 그 유지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거주 발전정책을 구성 실행한다.
- (b)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서비스와 기반설비 등에 대한 지역사회를 기초로하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자원의 재배치,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간계획 및 도시기간 설비의 디자인과 설치 등을 확정하는데 있어 여성을 포함한 지역 구성원 참여의 촉진.

88. 사회의 전반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행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자발적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적 기구, 지역구성원이 기초된 기구,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및 공적, 사적 기관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주거설비, 고용 및 사회문화시설에의 접근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배타적 행태를 금지
- (b)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간 교류를 고무하기 위한 기회와 물리적 공간의 제공

89. 도시의 빈곤과 실업은 거주개발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빈곤과 싸우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기구등 모든 연관된 집단과 파트너가 되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도시 빈민층과 특히 여성을 위해 생산적인 고용기회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거주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확보와 복구에 노동집약적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노동 집중적인 투자를 촉구한다.
- (c) 기본적 공공 물품 및 서비스 시설 마련에 있어 소규모 업체를 포함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비공식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지방의 사적 분야의 참여에 혜택을 주는 계약과 물품 조달 등을 촉진해야 한다.
- (d) 빈곤층도 신용대출 등이 가능한 혁신적 금융자원제도 등을 촉진한다.
- (e) 최소 규모(Micro)와 소규모의 개인 또는 조합 등의 기업체를 강화하고 시장의 확대와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등에게 취업기회를 확장하며 공식, 비공식 분야 사이의 연계를 강화한다.
- (f) 필요한 분석, 프로젝트의 준비 및 설계, 실행, 영향, 분석, 모니터링, 평가 등을 포함한 공동체 또는 지역적 수준의 프로젝트 운영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강화한다.
- (g)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착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 사설 자원봉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한다.

90. 남녀 성차이를 감안한 거주계획 및 그 운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공공 교통기관과 같은 도시의 기본적 서비스시설에의 접근 등에 여성과 남성, 남녀 어린이의 성 차이에 따른 요구를 감안한 법령, 기준, 표준, 개발계획 가이드라인 등의 채택을 촉진하여야 한다.
- (b) 남녀 성 차이에 따른 참여도 분석 및 지역사회 기구를 위한 법적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 (c) 환경에 관한 기간시설 및 도시의 기본적 서비스 시설에 관련되는 지역 개발의 모든 분야에 여성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다른 기구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여성만의 독자적 기구를 권장하는 정책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d) 여성의 토지나 금융 등에 접근을 막는 법적 또는 관습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이스탄불로 가는 길

- (e) 모든 수준의 교육에 성인 여성 및 여자 어린이의 평등한 접근 기회를 촉진해야 한다.
- (f) 연령과 성(age and sex)에 대하여 수집되고 분석된 모든 통계를 보증하는 성 차별이 없는 데이터를 산출, 보급하며 정부 산하에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접합한 거주개발의 주요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91. 특히 지역적 수준의 폭력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각 분야와 파트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건설적인 레저를 위해 공개된 공공장소의 확보 유지 및 사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적 행위를 최소화시킨다.
- (b) 청소년이나 거리의 아동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직업훈련 카운셀링에 사적인 분야에서의 투자 및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 (c) 그룹간의 교류, 갈등의 해결이나 중재를 이끌어갈 지도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 (d) 경찰 활동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게 하고 이웃간의 범죄행위 감시 및 방지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고 권장함으로써 개개인의 안전을 촉진한다.
- (e) 언쟁이나 분쟁을 해결기 위한 현존하는 전통적인 제도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강화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공정하고 인도적인 재판기구를 마련한다.

92. 취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부적 기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관 및 기타 봉사그룹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 (a) 도심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빈민계층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 등의 종합적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 (b)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과정에 원로회, 여성단체 주민운동본부, 청년그룹 그밖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여러 기관의 참여를 지원한다.
- (c)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 이니셔티브의 운영파트너 관계를 자원 또는 설립한다.
- (d) 장애자와 같은 취약자 그룹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개발한다.

4. 환경적으로 뒷받침되는 건강한 주거지

93. 주민의 건강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조치 등과 같은 환자의 환경적 요인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적어도 달려 있다. 질병을 방지하는 조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진료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효과적 운용체계 및 지역주민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에 의해 뒷받침된 환경정책의 범주 안에서 건강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법에 의한 것이 필수적이다.

94.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쓰레기처리나 빈약한 하수처리, 비효과적 위생활동 등은 수백만 사람의 생산성과 삶의 질적 향상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또한 사회적 계층간의 긴장, 부조화의 원인이 되고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에 주민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시골이나 도시 빈곤층을 위해 주변 환경이 건전한 기간 시설 확보를 위한 총체적 접근이란 생활의 질의 향상 생산성 증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감소, 국민 건강의 전반적 증진, 치료, 건강이나 빈곤 감퇴를 위한 투자 부담의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인간 개발에의 투자이다.

95. 집이나 노동현장에서 여러 가지 독성 화학약품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은 여성 건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해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큰 위험성은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빈곤층에 많으며 이는 그러한 지역에 많은 공해배출 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행(Actions)

96. 국민 특히 빈곤층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a) 빈약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 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의 건강플랜을 개발 실행하고 환경위생서비스를 강화한다.
- (b) 공기, 물, 토양의 오염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 (c) 가사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의 건강의 위해요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거주 조건을 향상시킨다.
- (d) 환경위생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모든 수준의 능력을 갖춘다.
- (e) 환경과 건강의 상호 의존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몸가짐, 훈련방법을 개발한다.

97. 주거지 환경상태를 향상시키고 공해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 또는 타 관련 기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a) 의제 21(Agenda 21)의 모든 관련 장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책과 각기 다른 분야간 상호 연계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야 한다.
- (b)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적절한 질적 수준을 특정하고 국가적 및 준 국가적 우선 과제와 조건에 맞는 환경의 개량과 적절한 실행시기 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법과 정책을 개발한다.
- (c) 환경에 관한 규약 및 이를 지역적으로 실행함에 따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 및 평가기구를 설치, 설비한다.
- (d) 환경관련 기술 선택 및 이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다.
- (e) 무엇보다도 환경관련 기술과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의 분야에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키고 거주에 대한 경제적 투자의 매력과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깨끗한 생산공정과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벌 규정을 마련한다.
- (f)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훈련방법을 마련한다.
- (g) 주요개발 플랜과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h) 지역적 환경관련 계획과 상호관련된 환경관련 건강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기 위해 이에 관련되는 관계자 사이의 상담과 파트너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원한다.
- (i)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적합한 거주 개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훈련 등을 각 지역사회 안에서 개발한다.
- (j) 환경관련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간에 정보, 경험 및 기술적 지원의 상호교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을 설립한다.

98.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스탄불로 가는 길

- (a)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 보존하는데 필요한 실행방법과 물 소비 패턴을 권장한다.
- (b) 자연이 물 오염을 순화시킬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주민 거주지 개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효과적 방법을 운용한다.
- (c) 환경에 적합한 오수의 소독, 취급 및 처리를 촉진한다.
- (d) 수질 위생에 관한 종합적 운영체계를 보장하는 법적 행정적 예산상의 장치를 마련한다.
- (e) 기간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99. 경제가 국제화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오염발생의 증가와 또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의 국가 또는 지역간의 이전은 거주지 및 주민건강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법적 통제하의 지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그 지역의 법적 통제를 벗어난 기타 지역에 환경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적 영향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리우선언 제13조를 실행하기 위해 보다 범지구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이 법적조치의 대상은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킨 회사의 모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올바른 에너지 사용

100. 특히 집중화된 도시지역내의 공업 또는 다른 산업활동이 집약된 곳에서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문제는 지속적 개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자동차 교통수단과 공업제품의 생산은 공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자연환경에 들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도시의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발전된 기술은 에너지 생산과 그 사용에 보다 나은 수단과 방법의 개발과 촉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거주지와 에너지에 관한 정책은 특히 물건의 생산, 교통 및 가정내의 에너지 사용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실행(actions)

101. 올바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부는 사설기관 비정부 관련기관,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기관 및 소비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한다.

- (a)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권장한다.
- (b) 재활용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거주지역내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에너지 가격정책 및 제도적 조치 등을 소개한다.
- (c) 에너지의 생산, 분배 및 사용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소개함으로써 도시지역에 효과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권장한다. 즉 폐열을 사용한 냉난방 시스템, 보조난방과 전력생산 및 재활용 자원과 기술의 사용 등
- (d) 가정내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용자 비용부담(user charges)과 그밖에 다른 조치를 소개 또는 개정한다.
- (e) 기존 산업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의 재사용 또는 이러한 시설을 새로이 건설함에 있어 금전적 이익을 배려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에 효과적이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 (f) 에너지의 생산, 운반, 사용에 기인한 오염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 (g) 건물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태양 에너지의 사용, 효과적 환기방법과 개량된 단열재 사용 등을 촉구한다.

- (h) 공업 및 농업 폐기물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물의 건축에 에너지 절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사용을 촉구한다.
- (i) 에너지 사용에 새로운 기술과 최선의 방법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6. 적합한 교통·통신 시스템

102. 교통, 통신시스템은 도시지역내 또 도시 상호간이나 지방에서 상품, 주민, 정보, 아이디어 시장에의 접근, 고용, 편의시설 및 토지이용 등의 움직임에 키 포인트가 된다. 교통은 에너지와 토지의 주된 소비자이고 공해 및 도시의 혼잡과 사고의 주원인이다. 개선된 교통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은 현존하는 교통체계의 단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103. 거주지 교통 관리체계는 직장이나 레저, 쇼핑과 같은 경제활동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확보 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토지이용 패턴과 공공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거리가 축소될 수 있도록 또 거주지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

실행(Actions)

104. 거주지에 적합한 교통체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a) 가능한 모든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정책을 추구한다.
- (b) 거주공간 구성 패턴을 직장, 상품, 서비스, 레저활동 등 기본적 욕구 활동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을 연계하여 교통거리가 축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 (c) 적절한 비용과 거주공간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해 도보나 자전거 및 공공 교통수단을 포함한 최대한 효율적인 교통 모듈의 구성이용을 권장한다.
- (d) 환경, 경제 및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고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 이용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체증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 (e)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고 교통의 주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공공교통 시스템을 마련한다.
- (f) 환경과 건강 그리고 주민의 안전에 해를 주고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의한 도심의 교통체증을 비용이나 도로이용, 주차, 토지이용 계획 및 교통소통을 원활케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또 교통체증이 심화된 지역에 다른 교통이용을 마련하거나 권장함으로써 감소시켜야 한다.
- (g) 연료 절약형 엔진, 배기가스 통제 및 대체연료나 에너지원 개발을 포함한 효율적인 저공해 기술의 사용을 권장 또는 규정하거나 그 사용을 강제한다.

105. 관련지방 정부 또 사설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직장이나 상품, 서비스 및 레저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효과적

- 이고 적절한 교통통신 수단을 추구한다.
- (b) 에너지 절약형 엔진, 배기가스 통제, 대체연료 및 에너지원 개발 등 효율적이고 저공해 기술의 개발을 촉진, 규정 강제한다.
- (c) 적절한 비용이나 거주 공간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을 통해 도보, 자전거, 공공 교통수단을 포함한 최적의 교통 모듈체제의 사용을 권장한다.
- (d) 환경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주고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저해하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은 그 비용이나 도로이용, 주차, 토지이용 계획 및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또는 다른 효과적 대체 교통수단의 마련 또는 이의 이용을 특히 체증이 심화된 지역에 권장함으로써 감소시킨다.
- (e) 주민의 전자통신 서비스 이용을 권장 또는 촉진한다.

7. 역사문화 유적지의 보전 및 복구

106. 역사적 장소나 문화적, 과학적, 상징적, 정신적, 종교적으로 가치있는 물품은 그 사회문화를 나타내는 현시품이다. 현재와 같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물품은 문화적 동질성과 계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에 관심이 촉구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건물 공간, 장소, 또는 풍경 등은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지역사회에 긍지를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나 농촌지역의 유적지의 복구나 그 보존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사용하는 천연자원이나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실행

107. 역사적, 문화적 유물 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당국과 같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사회의 정신적 가치 성장에 연관되는 건물, 장소 및 경관 등의 역사, 문화적 중요성을 발견한다.
  - (b) 보존의 가치 및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일반의 관심을 자극한다.
  - (c) 이들 문화재의 보수 및 복구를 위해 지방문화단체나 협회를 지원하거나 이를 권장한다.
  - (d)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 경관 등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적절한 재정적, 법적 뒷바침을 한다.
108. 문화재의 보존과 복구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개발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역사 문화유산은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됨을 인식한다.
  - (b) 역사적으로 내려온 도시 구조의 원형을 보호하고 역사적 장소에서 건물의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지와 경관의 역사적 패턴을 보호한다.
  - (c) 보존과 복구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 (d) 이러한 문화재 보존 및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 (e)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복구, 개축을 위해 지역사회가 기초가 된 활동을 촉구한다.
  - (f) 시내와 그 주변지역의 복구를 위해 공사 관련 분야간 협력을 지원한다.
  - (g) 보존 및 복구 프로젝트에 환경에 대한 배려를 꼭 반영한다.
  - (h) 역사 문화 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 정책을 제시한다.

8. 도시경제의 증진

109. 도시의 주거지는 경제의 변천 및 개발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고용기회 발생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인 기반 창출의 전제조건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도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GNP의 60%를 창출한다. 만일 인구증가나 도시에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면 도시는 그들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생태학적 방식에 의한 천연자원을 통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공업은 무역,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 주요한 활력을 제공한다.

110. 도시는 전통적으로 경제의 중심지로 이바지해 왔으며 서비스 활동의 주요 제공자가 되어 왔다. 경제의 성장 및 개발의 진원지로서 도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준도시지역 및 농촌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네트워크내에서 기능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 교통수단, 정보통신 시스템 등은 다른 도시나 농촌과 연계하여 개발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산기술, 무역, 소비 패턴에 급격한 변화는 도시의 공간구조에 변화를 유도한다.

111. 경제발전과 서비스 공급은 도심 재정비, 기반시설의 건축, 건설, 대민업무(Civilwork) 등과 같은 거주지 환경개선 활동으로 더욱 고무될 수 있다. 또는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성장요인이 된다. 즉 적절한 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의 효율성, 생산성의 향상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 조건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실행

11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공업, 무역, 금융관련 기관 등과 함께 다음의 일을 하여야 한다.
- (a) 도시의 지속적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조성, 실행한다.
  - (b)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면서도 그 기능과 목적은 공공을위하는 단체와 동업하여 새로운 공사 협력분야를 조성한다.
113. 생산적인 고용창출과 개인적 투자 기회를 마련키 위해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공업, 무역, 소비자단체, 금융 분야의 기관 등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 (a) 지역 업체의 요구를 염두에 둔 도심개발정책 분야를 조성한다.
  - (b) 경영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토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배분을 촉구한다.
  - (c) 신용과 금융부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능률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인 분야를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사업분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이 도시의 특수한 경제분야의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d) 도시를 위한 농업활동 기회(urban agriculture)를 촉진한다.
114. 소기업이나 최소단위 사업체 및 조합과 같은 분야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비정부기관 지역단체, 금융이나 직업관계 훈련기관 등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조합 결성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차별, 강제노역, 어린이 노동 등으로부터 해방이 요구

되는 지역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을 실행함으로써 인권보호와 같은 비공식적 분야를 노동 현장에까지 확대시킨다.

- (b)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나 추천 등에 의거 규제조치를 비공식적 분야에까지 점진적으로 확장시킨다.
- (c) 소기업 또는 최소단위 사업체 및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적 신용, 직업훈련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강화한다.
- (d) 비공식 분야에 대한 공정한 취급과 그 분야 소재지의 금융기관과 비정부 단체간의 연계를 권장한다.
- (e)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설계, 운영 시스템에 성장세에 있는 비공식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적인 분야에 이들의 이전을 권장한다.

115. 국제 경제에서 보다 경쟁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 경제를 강화함에 있어 정부는 관련지방행정 당국, 공업, 무역분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해야 한다.

- (a) 정보 시스템에 관한 훈련을 권장한다.
- (b)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 통신분야에의 투자 등 도시 기간시설 또는 서비스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산업구조 재편을 지원한다.
- (c) 공공용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권장한다.

116. 정부는 관련 지방행정당국과 구조개편과 경제적 변천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주민 거주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알림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권장한다.
- (b) 특히 빈곤층과 사회의 타 취약 부문, 최소규모 기업(Micro-enterprise)과 소규모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기초 사회 프로그램(basic social program)과 비용의 지출을 실행한다.
- (c) 소득과 자원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한다.
- (d) 기술, 인적자원 개발에 요구되는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공공 또는 사기업을 지원한다.

### 9.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거주지 개발

117. 비록 20세기 말까지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인구의 상당수는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농촌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기간 설비와 서비스의 부족,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의 미비,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공해 등은 농촌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을 국가경제에 포함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세우는 데는 농촌과 도시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 연결의 양극으로써 다루는 거주지 계획과 그 운영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기관이 필요하다.

118. 농촌지역 주민과 지역 토착민의 적극성은 국토 면적의 상당부분에서 안정적 식량확보와 사회 생태학적 균형유지 및 유약한 생태 순환계의 보호라는 범세계적 과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실행

119. 정부는 농촌지역의 적절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해야 한다.

- (a) 소의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의 국가경제나 농촌 서비스 활동 중심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 (b) 지방, 도시활동의 중심 소도시나 농촌지역 서비스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의 생활이나 작업조건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c)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이익을 보장한다.

120. 정부는 관련 지방행정당국과 함께 농촌 거주지 개발에 새로이 개발된 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개선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원거리 지역에 농산물의 생산, 판매, 가격에 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b) 농림단체와 협력하여 농업, 임업 또는 농림업의 전통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관한 리서치를 행하거나 리서치 결과를 선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121. 지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지방행정당국과 함께 다음의 일을 추진한다.

- (a) 균형있고 생태학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지역개발의 우선과제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이나 토착인 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립한다.
- (b)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지역개발 정책을 준비함에 있어 그 지역의 지리에 관한 정보 시스템과 환경평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 (c) 필요성과 경제적 생존능력에 기초한 지방 또는 농촌지역개발 계획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d) 경제적 잠재성과 그에 따른 이익의 산출에 기초한 농촌지역 자원 분배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22. 빈곤한 농촌지역에서 개발과 고용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지방 행정당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고용의 촉진, 교육, 건강시설의 마련, 기술적 기간시설 강화 및 지역 업체와 적합한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자극한다.
- (b) 사회적 관심분야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지역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c) 농촌지역에서의 자금의 흐름 또는 발매기 경제를(future contract economy) 개선하거나 설립함에 있어 계약에 기초한(contract-based)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중계제도를 개발강화하는데 사적 분야의 투자를 권장한다.
- (d) 농산물 특히 도시지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가격지불제도를 확립한다.
- (e) 과도한 농약사용을 조장하거나 농촌지역 또는 농촌경제내의 부적절한 가격 생산 시스템을 항구화하는 가격통제제도 같은 불이익한 자원제도를 없앤다.

123.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행정 당국은 관련된 국제 또는 국내 협회의 자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농촌지역에서 중소규모 거주지간 연결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하여 잘 짜여지고 적절한 법적, 재정적, 조직적 체계를 마련한다.
- (b) 도농이 연계된 지역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에 관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위해 지역사회간 광범위한 협력을 촉구한다.
- (c) 도시와 농촌개발에 관계된 사람 또는 업체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균형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대화 참여를 추구한다.

### 10. 재해에 대한 예방, 대처 및 재해 복구능력

124. 거주지의 천재 또는 인재 발생에 의한 영향이 증가일로에 있다. 전쟁에 의한 경우 외의 재해는 방만한 또는 부적절한 거주계획, 일반 기간시설의 부족 또는 재해 다발지역에의 정착 등과 같이 인간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해 및 긴급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비능률적인 국가에서 더욱 심각하다.

125.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시스템과 재난 후 대처능력을 재해지역 주변에서 보여주는 적극적 자원 봉사 및 지역 행정당국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재해로 인해 손상, 파괴되어 감소된 기간시설 또는 그밖의 범주에서 독립적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을 위해 정부와 관련 지방행정당국은 모든 지역사회 그룹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 시 그 실행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재해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통신, 정책결정 및 자원의 통제에 얼마만큼 빠르게 하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 실 행

126.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처 또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방 행정당국과 함께 보험회사, 비정부단체, 지역단체, 학술과학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재난과 취약성에 관한 조사분석업체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적합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에 관한 기준, 표준법령을 채택 강화한다.
- (b) 재난 감소 활동을 위한 각 지역 자원을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 (c) 건축이나 모든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난 대비 건축방법 및 기술에 관한 정보가 하부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한다.
- (d) 모든 국민이 재난에 보다 안전한 지역에 거주토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안한다.
- (e) 설계사, 계약자, 건축업자 등이 재난에 보다 안전한 건축방법을 익힐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주거 건축이나 소규모 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에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직접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f) 필요하다면 중요한 기간시설 라이프라인(구명체계) 및 중요 편의시설 특히 이들에 대한 피해가 제2의 재난을 가져오거나 구조활동을 제한하는 시설의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127. 재해에 의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은 국가의 정부는 지방행정 당국과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 (a) 재난 발생 가능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주거계획 및 설계에 포함시킨다.
- (b) 위험 가상도 작성(risk mapping),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취약성 감소 프로그램과 함께 재해에 취약한 지역공동체가 처할 수 중대한 위험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과 혁신적 접근방법의 창안을 촉구, 지원한다.
- (c) 분석, 모니터링 재난의 예방, 구조(relief), 재정착, 위난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하여 재난대비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 기능 사이의 역할과 책임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관해 분명히 명시한다.
- (d) 식수와 식량의 비축, 연료의 공급과 응급조치 등 지원이 가능한 지역내의 모든 형태의 시민사회 조직이 재해 대비 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e) 국민 또는 주민에게 닥쳐오는 재난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전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 또는 개발시킨다.

128.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재해 발생 후 구조활동, 복구, 재건축 및 재정착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이나 대비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재난에 대한 대비, 재해시 구조, 복구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각 부문 종사자 사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에 관해 확실하게 명시한 재해 대비, 대처 시스템을 설립 강화한다.
- (b) 유사시 대비 구조 활동을 위한 엄격한 훈련방법을 창출하고 재해 후 재건축을 위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행하며 재해 후 재건축에 관한 효과적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 (c) 지방 또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재해시 신뢰할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책결정 능력 및 대처능력을 키운다.
- (d)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계획과 복구, 재건축, 재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자금조달 및 신용 대출 등의 특별조치를 세운다.
- (e) 피해 분석 및 모니터링, 재건축 및 복구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 등을 위해 과학적, 공학적 능력을 강화한다.
- (f) 구조, 복구, 재건축 활동을 위한 관련된 모든 자금을 지원한다.
- (g) 재해 발생 후 복귀하는 주민이나 집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주거지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 지원한다.

### D. 역량 구축 및 체계적 개발

129. 지속적이고 급격한 도시화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력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거주는 지방 발전을 촉진하고 유도하며 공사의 지역공동체간 동반자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안점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단위의 정부 능력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지역구에서 가장 밀접하고 대표적인 주요 행위(Key actors) 대한 책임의 효과적 분산과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오로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전략적이고 참여적인 도시 관리 프로세스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분산화 프로세스와 현실을 직시한 도시관리 프로세스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한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천이과정에 있는 경제상태에서 많은 조직적 활동을 요구한다. 역량구축(Capacity-building)은 분산화(분권화)와 참여적 도시관리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그 방향을 정

할 수 있다.

130. 권능을 갖춘 전략, 역량구축 및 제도의 개혁(A enabling strategy, capacity-building, institutional development)은 특히 지방행정당국 사설 분야 협력체, 무역협회, 비정부적 기관과 지역사회단체 같은 주요 행위자(Key actor)에게 거주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적 자원과 지도력 개발, 제도의 개혁, 조직운영 개혁, 지속적 훈련 및 장비의 재정적 비 등에 대한 합심적 노력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비록 이런 기관 자체에서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국제지역 연합이나 해당 네트워크 또는 다른 국가, 준국가적 능력개발기관(capacity building institution)에 의해 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 또는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경제 아 래에서 정부는 역량을 늘리기 위한 포괄적 정책수행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UNCHS와 다른 관련 UN 산하국 및 국제금융 또는 다른 기관 등은 이들 국가가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제도 구현에 우선점을 파악, 분석하며 그들의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2. 지방정부와 관련기관 네트워크의 분화와 강화

### 실 행(Actions)

131. 지방 행정당국과 그 연합 및 네트워크의 효과적 분권화와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지방행정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이러한 일을 앞서 효과적으로 실행한 다른 멤버의 주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필요하다면 정책 및 법적 체계를 차용하거나 적용한다.
- (b) 국가, 사회, 경제 및 환경전략의 전반적 체계내에서 특히 인간, 기술, 금융자원과 지방업체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결정과 그 수행, 자원의 동원과 사용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을 검토, 개정하여야 한다.
- (c) 지방정부가 재원산출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d) 서비스 전달, 비용관리, 자원동원 협력관계 구축, 지방업체 개발에 있어 기술상의 조합과 경험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간 기술, 경험 및 매니지먼트 전문지식의 교환을 촉구한다.
- (e) 공공용품과 서비스를 전달, 운영, 유지함에 있어 또는 각 도시의 재정적 잠재력을 이용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이를 비교 분석하거나 개량된 방법을 보급하도록 촉구한다.
- (f) 지방에서 정책결정 및 그 운영 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g) 기간시설 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방경제 개발을 위한 목표의 설정, 지역의 주안점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준설정에 지방의 개인 또는 지역사회 분야를 참여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킨다.
- (h) 계획의 수립과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레벨의 정부와 개인 지역사회간 정책적 인 대화를 촉진한다.
- (i) 주민의 요구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관해 필요하다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급한다.
- (j) 지방의 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을 없애고 보다 큰 투명성과 효율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다.
- (k) 적합한 거주 매니지먼트에 국가 또는 국제협력기구가 특히 좋은 실행방법과 혁신적 접근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그 조합 및 네트워크가 솔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i) UNCHS(Habitat), 지방정부연합 네트워크 또는 기타 국제조직이나 기관이 협력하여 경험과 노하우 또는 전문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범지구적이며 쉽게 이용 가능한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 3. 시민의 개입, 참여와 정부의 책임

132. 적합한 거주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뿐 아니라 시민사회 조직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또한 모든 레벨의 능동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똑같이 요구한다.

### 실행(Actions)

133. 시민의 참여와 개입, 정부의 책임 수행을 고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정부 또는 시민사회 조직은 필요하다면 정책결정 및 그 실행, 거주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링 등에 모든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 가능케 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방향을 두어야 한다.

- (a)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본 권리 보호
- (b) 독립적인 비정부적 국제, 국가 또는 지방단체 구성의 촉진
- (c) 지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
- (d) 모든 형태의 미디어, 교육, 인포메이션 캠페인을 통해 시민정신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 방법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을 고무시킬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 (e) 정책결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광범한 상담기구의 설립
- (f) 시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조직이 새로운 정책, 플랜 및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공식화함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결정 참여방법을 확립
- (g) 시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시,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한 효과적 파트너 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기술 취득을 위해 개인과 비정부 단체와의 계약관계업무 숙지의 촉구
- (h) 정책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표명된 그들의 이익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또 상호간 연계 및 협력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및 합의 도출, 기술 등을 통해 평등과 공평의 촉구, 여성에 대한 배려와 취약한 저소득층의 포용
- (i) 관련부처가 법률에 명시된 사회와 환경에 대한 당국의 의무에 의거하여 실행사업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포함하여 사회와 환경에 유해한 결정과 사업실행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이 이러한 결정에 대항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적 행정적 창구의 손쉬운 이용을 촉구
- (j) 법적 자원 또는 무료법률 상담센터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이 법률적 서비스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촉구
- (k)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및 환경정책을 재검토하고 기본적 교육, 공중위생, 방범, 마약남용 감시, 환경관리 등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 활동을 위해 지역적 주안점과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 (l) 시민과 주 사업실행자(Key actors) 그룹 및 정책 결정자 사이에 정보, 경험 등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

이스탄불로 가는 길

134. 거주 매니저는 많은 레벨의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기술과 자원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적합한 기술인력 부족의 유약한 제도적 시스템과 기술 역량은 거주개선에 주요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거주계획과 매니지먼트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및 노하우 등을 필요로 한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의 정부와 국제적 공동체는 리더쉽 능력, 매니지먼트 전문지식, 노하우, 기술 등의 효과적인 개발 및 전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135. 거주 매니지먼트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지방 정부 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a) 리더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모든 레벨의 행정 관리자와 대민 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b) 매니지먼트 노하우와 경험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사의 지역공동체, 비즈니스와 경제 등에 관한 포럼(forum)을 설치한다.
- (c) 다음과 같은 일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지방정부협회 학계, 교육계, 리서치, 트레이닝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포괄적 훈련,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개발, 수행한다.
  - (i) 거주개발에 다영역간 어프로치 방법을 개발한다.
  - (ii) 조직 강화와 역량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트레이너 훈련
  - (iii) 특히 사회적 환경적 영향분석,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등에서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관련 리서치를 실시 또는 위임하거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발견된 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지역 능력 개발
- (d) 거주 매니지먼트에 관한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기술 등을 교환, 이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 (e) 필요하다면 공공분야 관리와 행정 및 기능면에서는 공적이나 그 관리면에서는 개인적이고 또 공적, 개인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분야 형성을 증진시키는 개인 분야의 참여를 권장한다.
- (f)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수도권(Metropditan)계획과 매니지먼트

136. 비록 거주개발 관리자는 많은 일상적도전에 직면하지만 수도권 지역 또는 거대도시 운영 개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는 그 규모와 업무와 책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들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수도권 지역 특성중 범지구적 경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 도시 빈곤의 거대 집중, 기간 시설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팽창,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생산소비 순환서클, 경제개발, 무역 금융 부문에서 전략적 역할, 심각한 환경악화의 잠재성 등의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다. 거대도시나 수도권에서의 자연 또는 인공적 재해는 인간, 물질 및 생산능력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피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대도시를 포함하는 행정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실행(action)

137.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점을 알리기 위해 모든 레벨의 장부와 관련 지방정부는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수도권 광역 계획과 관리 전략을 세운다.
- (b) 수도권의 구성체계와 행정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거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반영시킨다.
- (c) 수도권 지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자원의 동원 및 적합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창안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구성을 채용한다.
- (d) 토지, 에너지, 수자원 등의 관리, 환경관리, 교통통신 무역과 금융, 및 사회적 총합(Social lintegration)과 같은 지역적 국가적 중요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는 수도권 행정당국의 역량과 명령체계를 강화한다.
- (e) 주요 기간시설의 계획, 개발의 기술적 분야 또는 위난계획 등에 관해 필요한 부서에서는 숙련된 핵심 전문용원을 개발양성한다.
- (f) 교통 통신, 쓰레기처리, 에너지 절약, 사회복지 및 환경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수도권 행정부처 상호간에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와 기술에 관해 정책적인 상호 대화와 교환을 촉구 권장한다.

5. 국내 금융자원과 경제기구

138. 거주시설과 거주개발에 피리요한 자금은 주로 국내 자금원으로부터 나온다. 부차적으로 필요한 금융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조달받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재정적 기초에 가장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개발에 의한 발전, 건전한 금융거래, 국내자원 동원 능력 및 비용의 관리와 예산의 효과적 실행 등이다.

139. 미래의 도시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도시의 경제적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혁신적 금융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도전에 부딪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사(公私)간의 효과적 파트너 관계는 공업, 상업, 무역및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에 대해 생산 소비에 관한 지방세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도시경제개발 욕구와 기간 시설및 서비스를 지원키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금융이 필요하다.

실행(Actions)

- 140. 적합한 거주개발의 필요성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 경제 및 재정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적당한 레벨에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 (b) 국내 저축의 증진을 장려하고 이를 주택건설, 기간시설 및 거주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시적 경제 정책과 체계를 채용한다.
  - (c) 주택 건설, 기반시설 및 기초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또는 지방의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세금, 사용자 비용부담(user charges), 관세, 개량비 (betterment fee)를 포함한 국가와 지방 세수입의 효과적이고 균등하며 활력적인 세금원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환경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구를 창설한다.
  - (d) 국가와 지방의 세금징수 능력과 비용관리 능력을 강화시킨다.
  - (e) 사용자 비용부담(user charges)을 통해 도시서비스 비용의 완전한 충당을 추구하고 투명한 지원책에 의한 가격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요구를 해결한다.
  - (f) 기초 기간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건축, 그 운영과 유지에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협력관계를 고무키 위한 지방의 노력을 지원한다.

- (g) 그 중에서도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대출인의 능력을 감안한 대출이자율 및 신용시스템의 제도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국내, 지역 국가단체 또는 국제 금융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h) 지방기업개발을 위해 개인, 지역공동체와 협력분야(cooperative sector) 및 단체간의 파트너 관계 형성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진한다.
- (i) 지방정부가 중장기 투자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기구와 재정관리를 제도화한다.
- (j)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투명한 시스템과 절차를 설치한다.
- (k) 시기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실행성과 필요성에 기초를 둔 정부내 각부처간 상호협력기구를 제도화한다.
- (l) 도시개발에 개인의 투자를 유치한다.

### 6.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41. 무역자유화와 범세계적 규모의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과 관련하여 최근의 정보기술 발달은 도시의 역할과 기능, 정책결정 및 자원 배분 과정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기술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자국민이 그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정부는 공업, 무역 및 상업에서 엄청난 생산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된 정보기술은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는데 그 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진하고 개선하는데 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여성 또 그밖의 다른 취약집단이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상태에서 그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거주관례의 상호교환에 모든 중요 실행자(Key actors)와 지역공동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적절히 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실행(Actions)

142. 이러한 혁신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 (a) 정보기간시설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모든 레벨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이용을 촉구한다.
- (b) 주요실행자(Key actors)에게 이러한 정보기술의 사용을 훈련시킨다.
- (c) 지역 이니셔티브에 관해 인터넷, 네트워크, 도서관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해 지식, 경험을 공유하거나 실행 프랙티스를 보급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 (d) 공공도서관과 통신네트워크를 이용케하므로써 어린이, 청소년 및 교육기관의 참여를 촉진한다.
- (e) 거주에 관해 정부, 공사 및 지역 공동체가 습득한 성공, 실패 경험을 전달 보급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프로세스를 촉구한다.
- (f) 일반 국민이,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 (g) 공공정책,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접근을 보장한다.

### E. 국제적 협동과 조정(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 1. 소개 (Introduction)

143. 인간의 거주와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고 안전하며 보다 평등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 및 안정의 성취에 직접적인 이바지를 하는 것이다. 국제적 협동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가적 중대성을 갖는다. 따라서 거주개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협동, 조정 및 투자의 새로운 형태를 찾고 또 이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의 특별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144. 개발에 관한 공적인 지원이 하향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간시설과 서비스개발 및 그 운용에 사적인 참여의 증가와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극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원조방법에서 무역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협력을 이루는데 사적인 참여와 그 연계의 필요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다변적, 상호적 지원에이전시를 포함한 국제공동체가 적합한 거주개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개인투자를 촉진하는데 공공자원의 이용의 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5. 거주개발과 그 운영에 국제적 협력을 위한 혁신적 체계는 정책결정, 정책의 구성 및 자원의 분배에 모든 레벨의 정부, 개인과 협력체, 비정부기관 및 지역사회조직 등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시키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남-남(south-south) 또는 타지역 상호간 최선의 실행방법 전달,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 및 거주지와 도시지침의 적용, 인적자원 개발과 체계적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과 같은 계획운영기구(planning and management tools and instruments) 등과 함께 다변적, 상호적 지원 에이전시간의 협동과 조정을 위한 새롭고 개선된 조직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Enabling international context

146. 경제개발은 도시화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거주는 세계의 경제에 점차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범지구적 차원의 경제성장과 지속적 개발의 촉진은 거주에 관한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들에게 보다 긴요하다. 적절한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서 우리는 시정되어야 할 구조적 조정과 경제적 전환의 영향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 기술의 변화는 고용구조의 주요한 변화요인을 낳는다. 한 나라의 정부가 가능한 전략체계 범위내에서 거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총체적 책임이다.

#### 실행(Actions)

147. 한나라의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제전환에 의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a) 개방되고 공평하며 협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국제 경제환경의 조성을 촉진한다.
- (b)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한 기업체의 개발, 생산투자 공학기술의 이전 및 개방되고 활력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확장 등을 촉구한다.

- (c)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경제 질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거주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조정을 촉구한다.
- (d) 세계경제성장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148. 보다 특별히 국제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한다.

- (a) 도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국제교역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능력을 강화한다.
- (b) 거주지 확보와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해 국내, 국제 금융지원을 동원한다.
- (c) 국제금융자원에 접근성을 실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전환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다른 국가들이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한 거주지와 하부구조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장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d) 특히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안정, 금융위기 위험성의 감소와 보다 낮은 실제 금리를 통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거주개발에 보다 효과적인 국제 금융시스템을 촉진한다.
- (e) 지방정부를 그들의 거주지와 하부구조계획에 대해 재정지원할 수 있는 세계 금융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위험부담의 공유와 신용증진 촉진할 수 있는 범지구적 제도과 기구를 설립한다.
- (f) 거주개발에 필요한 거주지 건설 기초 기반시설과 건강 교육서비스 등에 적절한 기술, 금융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잘 관리된 공공 및 개인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다.
- (g) 거주를 위한 주거지와 기반시설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부채 균등교환 (debt-equity swapping) 조치를 시험한다.

### 3. 금융자원과 경제기구 ( Financial resources and economic instruments )

149. 거주지와 기반시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거주지와 도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공동체는 적절한 국내 금융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능성 있는 새롭고 부수적인 금융자원은 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현존하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원 (공적, 사적, 다변적이거나 상호적인) 을 거주개발을 위한 적당한 제도 및 경제기구를 통해 고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 경제적 협력은 지역국가수준의 국제적 협동과 조정의 발전에 전제가 된다.

#### 실행 ( Actions )

150. 공공개발지원을 위한 국민총생산(GNP)의 합의된 0.7%의 목표와 최저개발국의 지원을 위한 국민총생산(GNP)의 0.5%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서기 2000년까지 합의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번 회의에서 설정된 목표의 도달에 필요한 활동의 범위와 크기에 부합되는 적절한 거주개발 프로그램의 금융지원 부담을 증가시킨다.
- (b) 피난민, 국내 유랑민, 서류상 기록된 이주민과 집 없는 사람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와 거주활동 특별히 목적된 혜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c) 다변적, 상호적 기증자 사이에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계획 실행을 위한 그들의 지원을 동원한다.
- (d)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개인 및 협력분야가 주거지와 거주활동에 참여하는 동반자 관계(patnership)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를 다변적 또는 상호적 기증자(donors)가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e) 모든 국가가 특히 취약집단에 필요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과 기부금(soft loans and grants)을 마련한다.
- (f) 거주개발을 위해 공공, 개인 분야에 혁신적 자금원을 개발하고 자선기관과 개인 자원봉사를 포함 시민사회의 자원동원 협력 환경을 창조한다.
- (g) 공적, 사적 (公的, 私的) 자원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용을 증진시키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낭비적이고 맹목적인 지출을 감소시키며 빈곤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h) 적절한 경제기구를 통해 주거지 공급과 거주개발에 필요한 국제사금융의 흐름을 유인한다.
- (i) 공사(公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세계금융기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j)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개인(私的)의 장기적 범세계적인 투자(long term private global investment)를 위해 도의적 행동지침 (ethical code of conduct)모니터 제도, 예산 정책과 그 밖의 적절한 규칙제정 기구(rule making instrument)설립을 가능케 한다.
- (k)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세계금융자본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l) 비공식 신용기구가 세계자원 공급원과의 연결고리를 설치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비정부기관, 신용조합 및 세계금융기구를 포함한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주택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m) 개인, 국내 및 세계 자금의 보다 큰 흐름을 유치하여 적절한 거주지와 기반시설을 위한 효과적이고 공평한 가격체계를 수행할 수 있고 빈곤층을 위해 투명하고 목적있는 자금지원체계를 각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기술이전과 정보교환

151. 생산과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의 사용과 이전은 적합한 거주개발의 전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돕는 진보되고 적절한 기술과 지식이 뒷받침되는 시스템은 인적, 금전적 및 물적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과 보다 적합한 산업 실행과 새로운 고용원인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적 기구는 이용가능한 기술과 이전가능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정보에의 접근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실행(Actions)

152. 국가적 실천 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의 수행을 지원하는 기술과 전문지식의 이전을 촉진, 촉구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a) 환경적으로 건전한 주거지와 거주기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또는 기관(Stake holders) 사이에 적절한 네트워크를 설치강화한다.
- (b) 기술이전 과정이 정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기술을 수혜자에게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한다.

- (c)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포함한 기술 이전의 적절한 장치를 개발한다.
- (d) 개발 도상국과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 지역사회에 주거지, 도시서비스(Urban services), 기반설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한 조사 및 개혁에 특히 그 중요성을 둔다.
- (e) 거주와 관련된 새롭고 기대되는 기술 특히 기반설비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본서비스를 보다 적절하게 하며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 보급할 수 있도록 인간정주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와 UNCHS(Habitat)의 역할을 강화한다.

### 5. 기술 협력

153. 특수한 역량구축 프로그램에 기초한 국제적 실시가능한 전략의 실행에는 국제협력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는 세계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제도적, 법적 규제체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효과적 교환과 이전 그리고 적합한 도시경영의 최선의 실행방법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적, 지역국가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국제협력의 중심 장치와 기본적 요소의 하나인 UNCHS는 기술협력 활동에 효과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실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제적 지역 국가적 네트워크가 창설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관련된 UN기구의 헌신은 당연히 환영받아야 한다.

#### 실행(Actions)

154. 국제 공동체는 보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국가실행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의 수행에 관한 진보된 보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실행계획에(Global Plan of Action) 관한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는 항구적인 전자화상회의 형태의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세계거주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 (b) 이러한 세계거주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거주개발과 거주지 확보에 관한 정책, 전략, 계획 및 프로젝트의 정보를 모든 레벨의 정부, 사업실행의 주요 그룹 및 국제 개발에 이전시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c) 인간정주위원회의 지도와 유엔 지역국가경제위원회 (The United Nation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및 UNCHS의 지원하에 일반적 거주개발문제 또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제 공동체와 각국 중앙정부의 개발 목표의 주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구축방법(awareness building) 과 정보활동을 발전시킨다.
- (d) 거주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노력을 지원 촉진 시킨다는 관점에서 국가개발 발전정책에 관한 경험의 상호교환을 촉진한다.
- (e) 정보활동에 관한 유엔 지역국가경제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유엔거주위원회, UNCHS 사무국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대한 거주개발문제를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지방거주개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고무 시키기위한 역량구축에 초점을 맞춘 운용활동을 개발시켜야 한다.
- (f) 자연 또는 인공재해의 한 피해를 줄이고 또 이미 재해를 입은 국가의 재건축 활동에 목적을 둔 기술협력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 6. 단체의 협력(Institutional cooperation)

155. 증가하는 세계경제 상호작용에 직면해서 모든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은 거주개발 분야에서 공.사 단체의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는 거주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자원, 정보 및 능력 등이 수집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56. 세계주거회의 의제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체계를 구성한다. 이것은 이번 회의의 결과 분석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근 열린 거주와 관계된 최근의 유엔회의 특히 어린이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 (The World Summit for Children)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세계천연재해감소회의 (The World Conference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세계 소도(小島)개발회의 (Global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국제인구, 발전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제4회 세계여성회의 등과 같은 회의의 결과와 연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변적, 상호적 협동관계와 합동프로그램(joint program)에 보다 나은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UNCHS와 유엔 내외의 타 기관 사이의 증진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 실행(Actions)

157. 브레튼 우드협회(The Bretton Wood Institutions), 지역과 준지역개발은행 기금 및 상호지원 기구를 포함한 유엔 기구의 집단(The United Nations family of agencies)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한 국가의 정책, 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적합한 거주개발문제를 포함하도록 협력장치 설립 강화해야 한다.
- (b) 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지방정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local authorities)와 그밖의 모든 다른 책임있는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수립 강화하여야 한다.
- (c) 지방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개발한다.
- (d) 비정부기관, 자원봉사그룹과 지역사회조합 개인 또는 협력업체와 적합한 거주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e) 주거보급, 서비스공급 그밖에 주거개발에 필요한 활동과 공사협력관계를 지원한다.

### F. 세계 실천계획 (The Global Plan of Action)의 실행과 수행

#### 1. 소개

158. Habitat II에서 정부와 국제 공동체의 공약의 장기적 영향은 합의된 실천 강령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적합한 거주개발 프로그램과 거주지 확보에 관한 국가실천계획 또는 그 밖에 다른 관련된 국가계획 및 실천계획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될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가 그들의 계획수행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또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는 관점에서 세계실천계획(The Global Plan of Action)실행 진전 정도 측정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 2. 세계 실천계획의 진전도 추적 (The Global Plan of Action)

159. 유엔인간정주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는 보다 광범위한 환경, 사회 및 경제개발에 대한 고려와 함께 거주개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기적 검토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검토는 2000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18번째 회기위 위원회에서 토론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 (a) Agenda 21의 관련업무를 포함하여 적합한 거주개발과 주거지 확보에 관한 Habitat Agenda와 관련 활동의 실행 진척도 추적
- (b) Habitat Agenda의 전반적인 실시와 관련하여 자격있는 비정부기관과 지방정부로부터 관련된 정보의 유입을 접수 분석
- (c) 받아들인 정보의 분석과 종합을 토대로 경제사회심의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통해 총회(General Assembly)에 적절한 방법을 추천하고 지속가능한개발위원회(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보를 제공
- (d) Habitat Agenda의 목표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와 도시화 되가는 세계의 적합한 정주개발 진척도에 대한 분석

160. 중요한 거주경향과 문제점,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분석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개발에 복합규율(Multidisciplinary)적이고 주제적 접근은 UNCHS의 중요한 기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유엔 지역경제위원회(The United Nations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는 이러한 활동에 적절히 이바지할 것이다.

## 3. 지침, 최선의 실행 및 수행평가 (Indicators, best practic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161. 적절한 주거지 공급과 적합한 거주개발에 관한 정책, 전략과 그 실행은 반드시 그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그 중심이고 분석자이며 통합자인 UNCHS와 함께 유엔거주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다른 관련기관과 함께 UNCHS는 도시화의 주 경향과 도시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의 적절한 프로세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162. 현재의 주거지와 거주관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의 한 파트로서 모든 적당한 레벨의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의 실행방법을 파악 보급하고 주거지와 거주개발 지침 특히 Habitat II 준비에 적용되는 지침을 개발 적용하며 UNCHS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일은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가 실행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의 수행 분석을 위해 유엔인간정주위원회에 보고서 중앙정부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Habitat II 제 1차 실무 Workshop 자료 (1996년 1월 4일)

### 도시에서 정주, 빈곤, 그리고 환경의 통합적 접근

이창우 박사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I. Habitat II

1994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Habitat II 제1차 준비회의에서, 새로이 취임한 의장은 "Habitat II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중요한 후속조치"라고 전제한 바 있다. 리우회의에 의하여 구축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차원의 협력체제에 기초하고 또한 리우회의가 대중화시킨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공동과제로 하는 Habitat II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차원에서의 달성가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리우회의가 이루어놓은 지구협력체제가 없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구적 공동과제로서 일반화되지 않았더라면 Habitat II가 현재와 같은 중요성과 세계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리우회의를 지구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Habitat II를 도시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또한 Habitat II 제1차 준비위원회는 참가국들의 구체적 작업목표로서 첫째, 인간정주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환경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능력배양전략을 기초로 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계획하고 이를 채택하고 실천할 것, 둘째, 도시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하여 여러 기관들의 능력을 배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두번째 작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지표를 통한 주거상황 진단 및 도시화과정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뱅쿠버선언, 2000년 지구주거전략, 의제 21 등의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의제 21의 제3장은 빈곤퇴치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빈곤억제정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임을 천명하고 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있어 자원의존적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제7장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을 다루면서 7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적정주거 공급,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의 증진, 환경기초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증진, 에너지 및 수송체계

이스탄불로 가는 길

의 개선, 재해다발지역의 인간정주 기획 및 관리증진, 건설산업활동의 증진, 및 인적자원 개발 및 인간정주개발의 능력형성 증진이 그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적정주거공급을 위한 정책목표로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특히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을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주거지 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인간정주관리의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는 “모든 도시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정주의 지속적인 관리의 확고히 하는데 있으며 도시관리의 목표는 대도시주민, 특히 빈민, 실업자 및 무주택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7장의 곳곳에서 인간정주센

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의제 21과 Habitat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Habitat II의 주요 의제는 의제 21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빈곤, 주거, 환경을 통합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Habitat II가 도시정상 회담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의제 21을 도시정부차원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 제 21이 Habitat II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미를 살펴 보면서 지방의제 21과 Habitat II의 관련성을 검토해 본다.

II.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1. 역사

이미 1960년대에 신생 아프리카 독립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UN회의에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빈곤과 환경 그리고 인간정주 문제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이 서구 선진국의 도시문제, 나아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Barbara Ward여사가 처음 사용하였다. 1973년에는 UN의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74년 Mexico에서 열린 한 UN회의에서 채택한 Cocoyoc선언에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80년에 UN의 IUCN에서 작성한 세계환경보전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목표로서 자리를 잡았고,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에 펴낸 Brundtland Report를 통해 이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의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면서 세계인의 일상용어가 되었다. 1994년 6월 영국 Manchester에서 열린 Global Forum '94에서 그 주제를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로 정함으

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의제 21의 제28장에 의거,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시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1996년 말까지 작성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각국의 도시정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 비판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리우회의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리우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 회의가 20년전의 스톡홀름회의의 복제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두 회의의 사무총장이 동일인물이며 회의의 구성체계가 거의 유사하나, 지구환경문제는 지난 20년간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리우회의란 한마디로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전세계국가들이 동의한 회의였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에 모두 동의하면서 개발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27개 원칙으로 이루어진 리우선언은 개발의 신성불가침을 강조하면서 개발주의로서의 환경주의의 서막을 연 의의가 있다. 리우회의는, 낡은 개발의 시대를 청산할 좋은 기회를 상실하였고 오히려 개발옹호론자와 개발혐오론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성공적 활동의 결과 환경문제에 관한 합법성의 위기를 느낀 세계각국의 중앙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재정적 도움을 얻어 발언권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되찾은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WCED에서 다듬고 리우회의에서 대중화시킨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결국은 정부와 대기업에게 환경과피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리우회의가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왜곡시킨 점이 인정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유, 사회정의, 민주주의, 인간해방등과 같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목표, 가치관, 이념 또는 이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라는 말을 두고도 그 이해에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음을 볼 때, 일천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용어의 모호성, 개념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정치적 비순수성에서 이 개념의 약점을 찾기 보다는, 뉴턴과 데카르트에서 유래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원칙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미래, 자연, 참여, 형평, 자급의 5가지 요소(또는 대원칙)를 가지며 각요소는 3가지의 소원칙 또는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가. 미래세대의 원칙

- 1) 도시내에서의 어떤 활동도 미래세대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2) 현재세대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한다.
- 3) 전통이 존중되며 노령인력이 가치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sup>1)</sup>

나. 자연보호의 원칙

- 1) 생명유지장치로서의 도시생태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 2) 도시녹지와 야생동식물은 보전되어야 한다.
- 3) 유해오염물질의 배출은 통제되어야 한다.

다. 시민참여의 원칙

- 1) 지역사회가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2) 정보·기술의 교환을 증진시킬 자유로운 정보유통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 3)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간의 효과적이고도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라. 사회형평의 원칙

- 1)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2)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3) 부당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마. 자금경제의 원칙

- 1) 도시내의 생산적 자원은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2) 도시내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효율을 추구하며 에너지 절약적이어야 한다.
- 3) 도시내의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는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

위의 원칙들을 하나의 모델로서 재구성하면 [도-1]처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도-1]좌측의 단순모델은 앞의 5가지 요소만으로 지어진 오두막집이다. 미래와 자연의 요소가 양기등을 이루고 참여의 요소가 들보가 되며 형평과 자금의 요소가 함께 지붕이 된다. 각 요소는 각각 시간, 공간, 정치, 사회, 경제 차원과 대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문화라는 토양에 기초하고 있다. 대들보없이 두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구조를 shelter라고 부르고, 두 기둥과 들보로만 이루어진 구조를 frame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5가지 요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구조는 무너지고 만다. 모든 원칙들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모델은 각 요소가 3점으로 된 형태를 이룬다. 이 통합모델

1 미래의 요소에 전통과 같은 과거의 요소를 다루는 것이 일견 이상해 보일지 모르나, 미래란 과거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되 현재세대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미래가 단순히 현재의 추세를 예언되고 예측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에 있어 각 요소에서 하나의 소원칙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여전히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민참여가 들보로서 모든 요소를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개발정책의 우선순위가 미래, 자연, 정치, 사회, 경제의 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마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뿌리박고, 미래세대의 이익과 삶의 질을 항상 고려하면서, 생명유지장치로서의 도시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조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정의와 도시의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앞으로의 도시개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상기에 제시된 원칙과 모델에 입각하여 현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계획체계전반을 재검토하면서 그것이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개발철학과 도시공간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도시차원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가진 근본적 한계는 현대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없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에 있다. 모더니즘 사상과 경제논리에 기초한 현대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없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일체의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도-1] 지속가능한 오두막집 모델

5. 지방의제 21과의 관련

Habitat II가 도시정상회담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의제 21을 도시정부차원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이 Habitat II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의제 21을 개관함으로써 Habitat II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지방의제 21이란 용어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제28장에 나온다. 해당 조항은 "1996년까지 각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 21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적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제 21 준비가 한창인데 이미 인천광역시 1995년 6월 3일 그 린 인천 아젠다 21을 발표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도 1995년 9월 19일 녹색도시 부산 21을 발표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도시로서는 안산시가 가장 앞서 지방의제 21을 준비하여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시, 순천시, 춘천시 등이 지방의제 21의 준비작업을 하든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제 21의 정신을 도시차원에서 구현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의제 21은 시민운동, 계획, 그리고 보고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방의제 21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세계각국의 시민들이 앞장서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는 범지구적 시민운동이다. 인류역사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이스탄불로 가는 길

가지고 일시에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서 지방의제 21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의제 21은 의제 21의 제원칙을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계획이다. 기존의 도시개발계획들이 위로부터의 계획이었다면 지방의제 21은 아래로부터의 계획이며, 기존의 계획들이 특정대상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일계획이었다면 지방의제 21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계획이다.

셋째, 보고서로서 출판되어 1996년말까지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때 보고서는 국제통용어로도 작성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해당 도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방의제 21은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의제 21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이고 의제 21에는 환경문제 뿐 아니라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 인구문제, 소비문제, 보건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질, 대기, 소음,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계획만을 담는 것은 지방의제 21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초점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시환경보전 행동계획에 두어야 할 것이나 다루어야 할 의제에는 빈곤, 주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환경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아야 하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정주, 빈곤, 환경의 통합적 접근

1. 정주, 빈곤, 환경의 문제상황

가. 도시정주

정주가 반드시 주거나 주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주란 주택, 건물, 토지이용, 교통, 도시공간구조 및 자연환경을 모두 일컫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구의 정주형태를 모델로 하여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는 무관하게 개발되고 관리되어 온 것이 20세기 지구의 정주모습이었다. 열대지방인 말레이시아의 대도시에 추운 지방에서 살아 온 영국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영국식 건물이 웅장한 모습으로 자리잡아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풍경을 정하였고, 인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세기 정주문제는 각국의, 각 지방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현대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 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방고유의 정주양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의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자국 고유의 정주양식을 회복하는 것은 빈곤, 환경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초가집을

더 이상 빈곤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지형지세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자재를 지방산으로 이용하지 않는데서 오는 에너지낭비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주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도시계획시설을 장기에 걸쳐 미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이다. 사업시행과정에 있어 토지를 오직 부동산가치로만 파악하여 사업의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사회적 형평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사회적 측면이나 환경보전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까지 지방도시의 주요 토지개발방식이 되어 있다.

셋째, 택지개발사업 또한 많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 및 특혜시비 등 악영향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시부터 대외비로 하면서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없이 지구경계선을 결정하고 있다. 주민과 주민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생활의 터전을 개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비밀행정을 정당화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한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다.

넷째, 용도지역제는 그 분리의 원칙때문에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자동차에 의 의존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나. 도시빈곤

유엔은 1994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발문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빈곤을 완전하게 타파하여야 한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1996년은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이다. 1995년 12월 18일 유엔에서 열린 빈곤퇴치의 해 선포식에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최대과제는 빈곤으로 사회안녕과 합법적 정치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생존을 위하여 도시, 특히 대도시로 몰리는 빈민은 빈곤과 도시문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구과밀로 인한 환경악화는 바로 빈곤과 환경이 또한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빈곤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빈부격차도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를 몇년 남기지 않는 현시점에서 세계는 지금 빈곤때문에 고민에 휩싸여 있다.

빈곤문제는 궁극적으로 윤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운전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빈곤문제는 결국 윤리문제와 통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적 주제라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헐벗음과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당연하며 이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즉 어디에 사는 것과 관계없이 빈민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자선은 빈민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정치개혁은 빈민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다. 도시환경

도시환경문제가 단순히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등의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볼 때, 환경보전적 도시개발이란 기존의 환경관리식 접근방법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환경보전과 경제개발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시차원에서 다시 정리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원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흐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성장의 환상을 탈피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현대도시계획에 대한 철저한 비판없이 단순히 지속가능성 개념을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아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간인식으로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구환경문제의 뿌리에 Newton과 Descartes에서 유래하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모더니즘과 경제개발이라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을 버려야 할 때이다. 도시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토지를 부동산가치와 평수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토양, 토지상의 동식물, 나아가 지상의 미세기후와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실체로서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 요소들이 설혹 可視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호 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주거, 빈곤, 환경의 통합적 접근

가. 개발의 희생자

도시빈민을 개발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개발, 진보, 부의 창조 등의 이름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개발이란 명분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은 뿌리가 뽑힌 채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다. 개발을 삶의 질의 잣대로 삼아선 안된다. 건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맹목적인 개발은 무의미하다. 이제 개발의 시대를 보내고 관리의 시대를 맞이할 때가 왔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란 환경친화적 도시관리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새로운 도시철학이 필요하다. 빈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개발의 희생자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의 희생자 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이 다름 아닌 도시빈민이다. 빈민들은 오염된 환경에 가까이 또는 그러한 환경속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내의 수질 및 대기오염, 토양오염의 제일차적 피해자가 된다. 에너지, 상하수도 공급, 쓰레기 처리, 주택 공급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도시빈민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자비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이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모더니즘의 망령이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자마자 세계는 성장의 한계가 없는듯 미친듯이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19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유행하자 20세기내에 모든 개발을 해치워야 하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가 세계최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최대가 아니므로 세계최대의 공항 건설, 세계최대의 공장 건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계최대의 공장은 단기적으로는 국토환경과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경에의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시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연의 순환체계를 통하여 도시환경, 국토환경 나아가 지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다. 국토의 환경용량을 생각하여 양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되 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나누어 농촌은 악이고 도시는 선인 것처럼 오해하여 모두가 도시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남성적 가치가 최우선시되고 있다. 남근승배사상은 도시의 고층 건물, 웅장한 교량, 넓은 도로 등 곳곳에서 표출되어 그 치부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모두 현대주의가 빚어낸 20세기 말 우리 삶의 왜곡된 자화상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준비하는 것이 21세기를 몇년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자 과제이다.

나. 몇가지 사례

주거와 빈곤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첫번째 예로는 북한의 작년 홍수피해를 들 수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결과 북한에서는 서서히 환경오염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한은 국토개발계획상의 착오를 바로잡고 환경파괴를 방지하면서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강·하천 유역을 개발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76년 이른바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 5대 방침중의 하나인 다락밭 건설사업이 바로 지난번 홍수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다락밭 건설로 인하여 강우시 표토유실이 일어나고 토사가 강으로 흘러들어가 하상을 높여 결국 작은 비에도 홍수가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작년 여름의 홍수피해는 현재 북한주민들을 기아선상에 놓이게 하였다는 보고가 외국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홍수피해로 곡물 수확량이 반감되고 식량배급이 거의 중단되어 식량부족



질오염 등 도시환경오염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빈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Habitat II의 주요 의제는 의제 21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빈곤, 주거, 환경을 통합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나와야 한다.

IV. Habitat II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응

1. 빈곤과 주거문제를 지방의제 21의 주요의제에 담는다.

지방의제 21이 리우선언 및 의제 21의 정신을 도시차원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므로 리우선언 제5원칙과 의제 21의 제3장, 제7장의 내용을 지방의제 21에 담도록 한다. 빈곤계층이 인류의 공동재산인 토지를 비롯한 물, 공기 등 자연자원에의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 도시빈민의 건강문제를 환경과 연계시킨다.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제까지 간과되어 온 것이 사회적 형평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이다. 도시빈민은 환경오염의 제일차적 피해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환경을 가차없이 유린하는 파괴자가 되기도 한다. 수해상습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시빈민이며 조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또한 도시빈민이다. 그러나 도시빈민이야말로 도시의 실질적 건설자이며 관리자이다. 도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가 그들이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자가 그들이다. 도시빈민문제의 해결없이는 도시환경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도 이를 수 없다. 구체적 환경오염이 어떻게 도시빈민의 건강을 해치는가를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도시계획체제를 개편하는 운동을 벌인다.

빈곤을 재구조화하는 도시재개발 등의 도시개발방식들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서구식 경제개발논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 첫째, 더 이상의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차선수 \* 도로연장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도로율은 선진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 둘째, 텃밭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을 전개한다.
- 셋째, 보행자가 주인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육교를 없애고, 도로시스템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한다.

4. 자연의 순환법칙에 순응하는 생활양식 운동을 펼친다.

서구식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환경문제의 뿌리에 있다. 소비행태 및 생산양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바꾸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세식 변소를 점진적으로 환경친화적 화장실로 개조해 나가고, 지하수 공개념을 확산시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회복하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쓰레기 제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국가개발에서 인간개발로 국가정책의 기초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인간개발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연구와 운동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민간보고서 작성팀 구성 및 보고서 개요(안)

1. 보고서 작성팀 구성방법

- \* 보고서 작성팀내에 분야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둔다.
- \* 보고서 작성팀과는 별도의 행동강령 분석/검토 및 제안해야 할 부분을 정리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 \* 보고서 작성팀의 위원들을 각 단체에서 책임있게 위촉한다.
- \* 보고서 작성팀은 상집위와 상임집행위원장에 대해 책임진다.

2. 보고서 작성팀의 운영방법

- \* 각 위원회 별로 작업을 진행하되 보고서 작성팀 전체 월-샷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 조정
- \* 보고서 작성팀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위원회별 간사를 두고 상임집행위원장이 총괄한다.

3. 민간보고서의 개요

3-1. 전문 ..... 주제,분야별 원고 취합후 작성

- \*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약간의 개괄(현상과 원인)
- \* '주거권'에 대한 포괄적 정의(?)
- \* 민간보고서 작성의 취지와 구성의 개요

3-2. 구체적 주제

1) 도시계획(책임;하성규)

주제 예) 인간적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발상

2) 주거(책임;전빈협)

주제 예)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3) 교통과 환경(책임;환경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연합에 원고 청탁키로 함)

주제 예) 도시화와 인간적 교통/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략

4) 사회복지(책임;참여연대-조홍식)

주제 예) 여성,아동,청소년, 노인층, 무주택자 등을 보호하는 도시환경 건설

5) 인권(책임;민변에 의뢰키로 함)

주제 예) 인간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권과 제도개선의 법적 문제

6) 노동 ;

7) 경제(책임;유재현)

주제 예)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경제와 자치단체의 역할(공급적측면)

8)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운동(책임;박문수)

주제 예) 지방자치와 인간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시민참여운동의 방향

9) 제언(책임;분야별 보고서 취합후 작성)

주제 예) 21세기 유기적 도시환경의 건설 가능성(농촌과 도시및 전망)

4. 보고서 작성 일정

\* 11월, 보고서 팀 구성(각 위원회 포함)

\* 12월초- 12월말까지 주제별 책임자가 팀구성 등을 통해 주제별 보고서 초안 작성

\* 96년 1월, 각위원회별(혹은 전체) 중간 월-샷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전체보고서 구성과 관련한 WORKSHOP

쟁점조정

\* 96년 2월, 심포지움(보고서 작성 내용중 중심이 되는 1-2개의 주제로)

기초보고서 작성

뉴욕회의에 기초보고서 제출

\* 96년 4월, Habitat II 사무국과의 의견 조정과 보고서 마무리

5월, 토론회/심포지움 통해 최종보고서 작성 완료

5월, 영역 및 보고서 제출 전체 개요

세계주거회의(HABITAT II)한국 민간위 참가자에게

1. 올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UN의 세계정주회의(HABITAT)는 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부터 코페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담(WSSD) 그리고 95년 북경의 여성대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여성,사회복지 등 지구촌의 제반문제를 총망라하는 금세기의 마지막 회의 입니다.

2.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에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는 인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를 토의·결의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따라서 UN에서는 이번 회의를 '도시정상회담'이라 부르기도 있습니다.또한 지난 2월 5일부터 뉴욕에서 열렸던 제3차 준비회의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사회방향, 도시문제,노동,여성,환경,어린이,노인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NGOs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 HABITAT II 한국민간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한국의 민간 시민사회단체(NGO)가 96년 6월,터키 이스탄불에서 UN에서 주최하는 HABITAT II회의와 관련하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HABITAT II 한국민간위원회는 그간의 사업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의견과 내용을 토대로 이스탄불회의에서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4. 이번 터키 이스탄불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저희 민간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화 50\$ (약 4만원)을 한국 민간위 사무국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은행 041- 21- 0353 - 586 예금주 :나효우)

신청인은 뒷 면의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가 신청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등 자세한것을 모를때는 연락처 명기)
- \*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5월 3일까지 여권을 만드셔야하며 아래 영문 성함은 여권에 표기된 대로 쓰셔야 합니다.

\* 세계주거회의는 공식행사일정은 6월 3일-6월 14일까지이며 5월 30일 부터 6월 11일까지는 NGO의 공식 일정입니다. 출발일자와 복귀일자는 항공일정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간위 참석자는 NGO 회의 일정에 따라 활동하게 되며 부득불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아닐 때는 항공료가 인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문을 참석자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주거회의(HABITAT II)한국 민간위 참가자 신청서

이름 :	(한문)	이름(영문):
직업 :	남, 여	
주민 등록 번호 :	영어 회화 (상, 중, 하)	
소속 단체 이름 :		
소속 단체(영문) :		
주소(단체) :		
주소(영문) :		
전화 :	Fax :	
개인 연락처 :	BP :	
참가 목적:		
체류 기간 :	1. 5월 30일- 6월 11일 2. 기타 ( 주 월 일 - 코 월 일) 2번의 경우 이유:	
봉사 희망 부서	1.통역 ( ) 2.문화행사 ( ) 3.행사 실무 준비 ( ) 4.번역 ( ) 5.PC 통신 ( ) 6.기타 ( )	
접수 일자 :	1996년 월 일	참가회비 (50\$) ( O . X )

본인은 위와 같이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신청일 : 199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대리인 서명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귀중

'96 Korean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 전화 (822) 3673-3031~3 전송; 3673-3278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선언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우 환경회의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담을 거쳐 이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통해 종합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각나라와 사회진보를 바라는 모든이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입니다.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주거회의는 '인간 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빈민의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는 세계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井柱)'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 채택을 목표로 하는 세계주거회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명과 세계화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저소득주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과 강제철거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장위주의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야기된 도시문제, 특히 주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빈곤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세계주거회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정책을 고민하는 모든 민간사회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국민과 함께 21세기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과 '주거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50여년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수립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제적 연대의 확대를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행동강령 채택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당국이 세계주거회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민간위원회에서 전개되는 제반 활동의, 결과물을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단순한 보고서의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로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모든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창립과 활동이 21세기 통일조국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과 '주거권 실현'을 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수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95. 10. 09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Korean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전국도시빈민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천주교도시빈민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ACHR한국위원회,Y WCA,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추),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부 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참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5년 10월 9일 창립당시)

### 주소록

#### 1. HABITAT II 한국민간위원회 참여단체 및 연락처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전송;522-7285) ID : M321
-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766 - 5393 전송;745-4502) ID : CCEJ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795-5918, 796 - 8364 전송;793-4745) ID : PSPD
-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777 - 7261. 778-3414 (F)
- \* 한국도시연구소 (701 - 9004) ID : KOCER
- \* ACHR 한국위원회 (701 - 9004), ID ; X885
- \* 전국도시빈민협의회 (3673 - 3031-3, FAX:3673 - 3278)
-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253-2530). 253-5648 (F)
- \* 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 환경운동연합 (735-7000, FAX 741-1240)
- \* 녹색교통운동연합 (720-7879, FAX 723-6287)
- \* 한국여성단체연합 (273-9535, FAX 273-9539)
- \*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4)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794-4560 Fax: 796-4995)
- \* 녹색연합 (042) 253-3241-3 FAX: 042) 253-3244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725-5828.9
- \* 전국농민회총연맹 : 529-6347-8
- \* 민주노총 ; 765-2010 FAX : 765-2011
- \* 서울민주노총 : 766-5892 FAX:766-5895
- \* 한국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 765-9576
- \*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 3141- 4477-8 FAX: 3141-4479

#### 2. 주요 연락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 504-9133. 504-6128(F)
- 건교부기자실 504-9033,7 FAX: 503-7415.6
- 외무부 환경기구과 720-2329,720-2522 FAX : 725-8468
- 국토개발연구원 (0343) 87- 3673
- UNDP 790-9566, UNV (Mr.Heiz) 서울시 국제교류과 750-8501
- 데이콤 220-7063 나우콤 590-3848
- 시민운동지원기금: 790-5200 ,
- 경실련환경개발센터 765-6920.1 FAX: 765-9861

세연 여행사 738-1303, FAX: 737-7797

담항공: 545-9349

이스탄불 한국 숙소 : (90) 216-711-3627-8 (FAX:90-216-711-4003)

이스탄불 여행사 : (90) 212-258-7111. 6879 (FAX:90-212-258-3657)

#### 3. 국제 연락처

필리핀 (632) 927-7001(F & T) (632)926-6755(T)

(632) 921-6130 (Dinky)

HIC (멕시코) (525) 593-3139

HABITAT II 사무국(케냐 나이로비) (254) 2-62-3033(T) (254) 2-62-4266 (F)

E.Mail : habitat 2 @ unep. no

뉴욕 1-212-963-4200(T) 1-212-963-8721 (F)

터어키 이스탄불 (90) 212- 559-3508

(90) 212 - 559-0509 (F)

터어키 이스탄불 NGO Forum : (90) 212 - 251-5170

(90) 212- 251-5179 (F)

#### INTERNET

WWW Http : // habitat. cedar. univie. ac. at/ habitat/

http : // www. igc. apc. org/ habitat/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자료집

#### 이스탄불로 가는 길

세계 주거회의(HABITAT II) 안내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도시정상회담: the City Summit)

발행인 / 공동대표 김진홍, 권태준, 김혜경

발행처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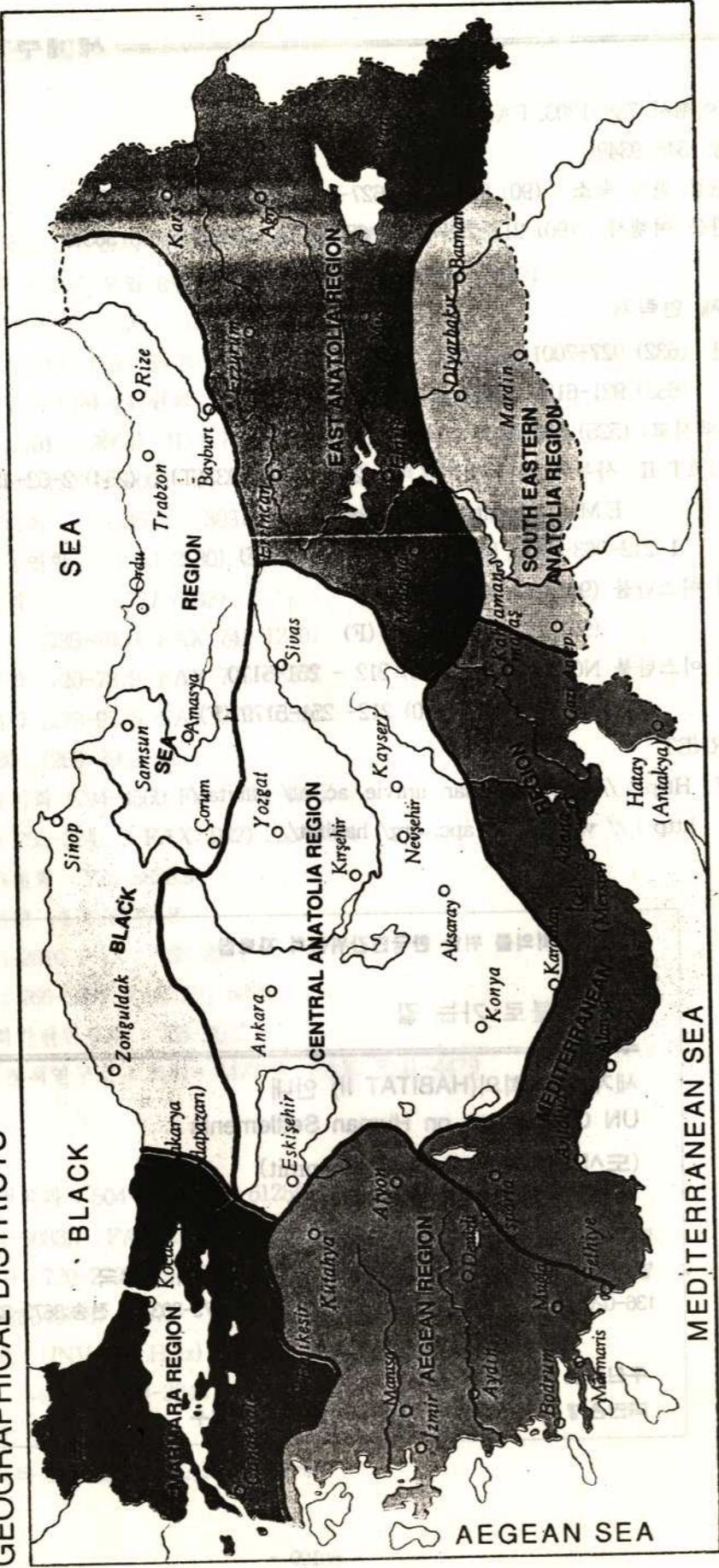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3673-3031-3 전송:3673-3278

후원금을 보내주시요

국민은행 : 041-21-0353-586

예금주 : 나포우

**GEOGRAPHICAL DISTRICTS**



**(BLACK)**

